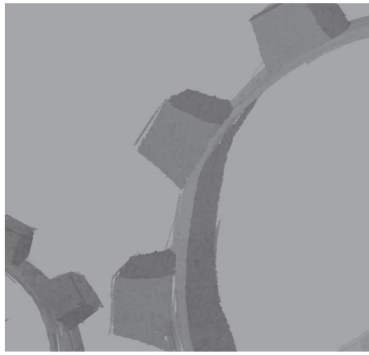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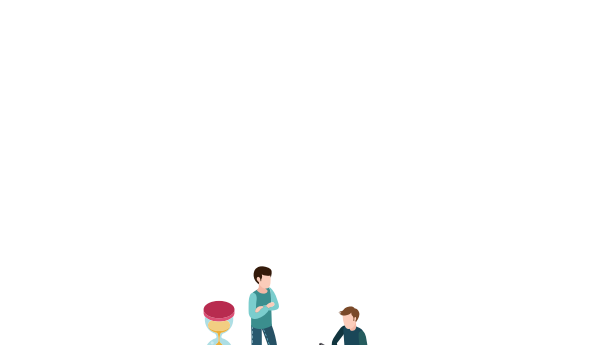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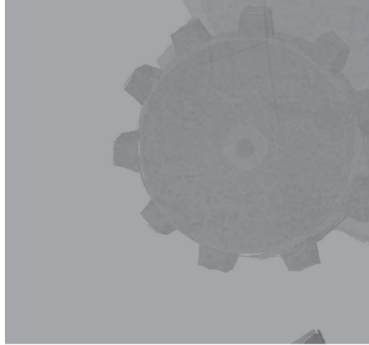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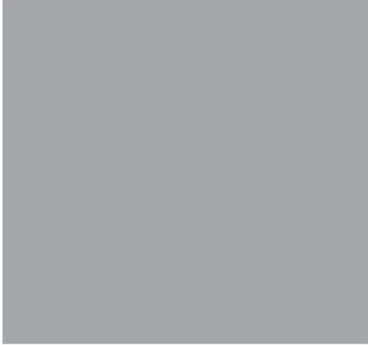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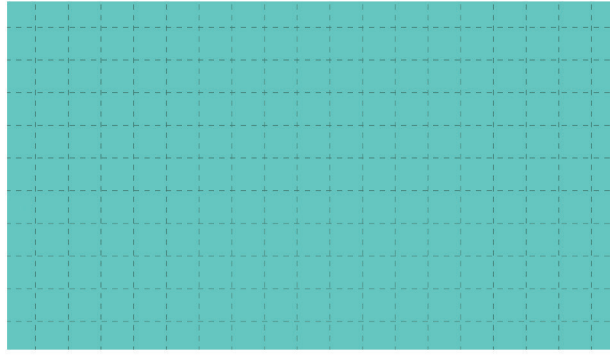




대학 창업교육 운영 매뉴얼

2.0







대학 창업교육 운영 매뉴얼 2.0

CONTENTS

▶ I. 창업친화적 대학 교육제도	4
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4
2 대학에서 창업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는 제도?	14
▶ II.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17
3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여 학생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절차?	17
4 대학의 지적재산권을 학생창업과 연계하는 방법?	21
5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절차?	25
6 대학의 다양한 창업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28
7 대학이 지역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방법?	33
8 학생 아이디어와 대학 연구실을 연결하는 방법?	42
9 학생을 위한 창업준비실 운영 방안?	44
▶ III. 창업인식 개선	47
10 대학이 청소년층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47
11 대학이 청소년층에 교육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51
▶ IV. 묻고 답하기	53



01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활성화 시키는 방법?

1. 추진 배경 및 목적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창업휴학제,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 교류제)도입에 따른 대학별 운영규정, 활용현황 분석과 우수사례 발굴 및 전파를 통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선 및 활성화

2. 운영현황 및 활성화 방안

가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개요 및 현황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에 대한 올바른 이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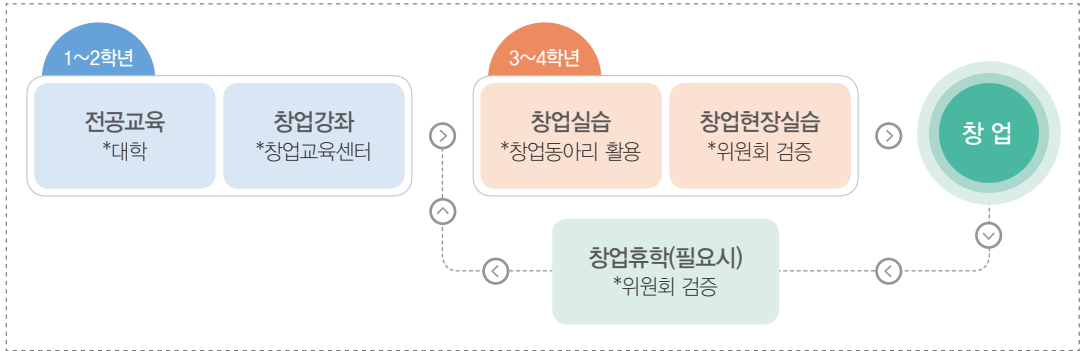
- (운영 매뉴얼 주요 내용) 기 배포된(14.3.)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은 창업휴학제 등 학사제도 도입 시 참고할 수 있는 주요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TIP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매뉴얼은 동일 기준을 제시한 것이 아니므로 내용을 참고하여 대학별 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활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주요 내용

구분	개념	적용대상/기준	세부 내용
창업휴학제	휴학사유로 창업을 인정	- 원칙상 전공관련 분야로 한정하되, 대학자율판단으로 휴학 인정가능 - 창업교육 과정을 일정 수준(대학자율 기준 적용) 이수한 학생 대상 권고	- 2년(4학기)이내 권장, 기간은 일반휴학 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 신청이 가능하게 하여 실질적 활용도 제고 - 매학기별 신청가능하나, 1개월 이전 창업 또는 대학 심의 후 신청 가능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정규학점 인정	- 창업실습(창업준비활동) - 창업현장실습(창업활동) - 지도교수(대학전임교원) - 구체적 활동결과물 평가	- 창업준비활동(창업실습)은 한학기 3학점 이내, 연간 6학점 이내 이수 가능 -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은 한학기 6학점 이상~18학점 범위 내 대학 자율 판단 - 창업현장실습은 기간내 지속적인 창업활동이 요구되며, 폐업시 미이수 처리
창업학점 교류제	우수한 창업 강좌 교류 활성화	- 창업강좌로 지정된 타 대학 창업강좌 수강 학점인정 - 기존 학점교류 운영지침 활용 또는 대학 간 창업강좌 교류 협정 체결	- 창업관련 사이버 강좌 등 활용 - 온라인 창업강좌 수강시스템 개발을 통해 전 대학이 우수한 창업강좌 수강이 가능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목적)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핵심은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창업실습) 및 실제 창업활동(창업현장실습)등을 학사제도 내 지속적인 학점강좌로 마련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방지하는 ‘창업친화적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임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K대 활용사례)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현황

- (도입 현황) '14년 11월말 현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 완료한 대학은 총 24개 대학(4년제 15개, 전문대 9개)로 조사되었으나, 내년까지 점진적으로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임
 - ‘창업휴학제’ 도입대학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운영규정 등 인프라 구축이 요구되는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및 ‘창업학점 교류제’는 점진적으로 도입 중
 - 단순한 시행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추진을 위한 인식개선 및 실행조직 마련 등의 추진체계 구축이 요구됨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현황('14. 11월 기준)

구분		도입완료	'15년 1학기	'15년 2학기	'16년 1학기	합계
창업 휴학제	대학교	80	8	2	3	93
	전문대	39	13	2	13	67
	합계	119	21	4	16	160
창업 대체학점 인정제	대학교	26	18	13	14	71
	전문대	17	11	6	26	60
	합계	43	29	19	40	131
창업학점 교류제	대학교	28	13	11	17	69
	전문대	9	7	5	27	48
	합계	37	20	16	44	117

- (학사제도 운영규정 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대학의 관련규정을 분석해 본 결과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취지와 정확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례가 일부 발생함

-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창업아이디어를 가지고 실제 창업기업을 설립하는 학생에게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의미하나, 일반기업 현장실습 또는 인턴십과 혼동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정확한 운영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가 필요

* 창업실습: 창업동아리 활동 등 창업과정을 학점으로 인정

** 창업현장실습: 실제 창업(사업자등록) 후 창업활동에 대해 학점으로 인정

- 대학별로 추진되고 있는 운영규정은 기존 학칙 또는 현장실습운영규정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새로운 창업규정을 신설하는 경우가 다수이며 창업교육센터 내부 운영규정으로 잘못 운영되고 있는 사례 등이 발생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유형]

- (창업휴학제 운영현황) ‘창업휴학제’는 창업 활동으로 인한 학업 단절을 방지하기 위해 휴학이 가능한 사유로 ‘창업’을 학사규정 내에 마련하는 제도

- 많은 대학들이 기존 교내 휴학규정에 창업휴학관련 내용을 추가하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으나, 일반 휴학과의 연계 및 별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보완 필요

TIP 창업휴학 기간은 대부분의 대학들이 최소 1년에서 최장 4년까지 운영하고 있음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현황)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중 대다수 대학들이 추진과정에서 가장 많은 애로를 나타내고 있는 부분으로 제도의 정확한 이해와 운영 필요

- 기존 창업동아리와의 적용 차별성 기준, 「창업실습」 과목 개설에 대한 이해도 부족, 지도교수 활용 (시수 인정 등) 및 세부운영내용(커리큘럼/구체적 결과물 등), 「창업현장실습」에 대한 오해 등이 발생

- (창업학점 교류제 운영현황)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점교류제도를 활용하고 있어 창업관련 강좌 교류에 대한 제도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우수한 창업강좌 보유 대학 및 관련 조직과의 교류협력 등 활성화 필요
 - 다수의 대학들이 우선적으로 교내 '창업휴학제'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등을 마련하고, 추후 양질의 창업강좌 개발 또는 우수 창업강좌 보유 대학 및 조직과의 교류협력을 계획 중이나 특성화되고 차별화된 양질의 창업강좌를 대학 간 교류하는 학점교류 제도의 활성화가 필요

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 방안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필요사항

- (내부 구성원의 인식 개선)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및 활성화를 위한 대학 본부(의사결정권자) 등 내부 구성원들의 창업교육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인식 확보 등 선행 작업이 반드시 필요

TIP 대학 내 창업교육전담기구 차원에서는 관련 규정과 제도 시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내부 구성원 (교수 및 직원) 설득 및 공감대 형성 부족을 호소함으로 내부 공감대 형성이 반드시 필요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등 제도 구축)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별 역량과 자원의 차이를 반영한 특성화된 창업교육을 추진하고, 아울러, 기반 구축을 위한 조직 및 규정 마련 등의 제도 구축을 병행

TIP 대학별 창업교육은 보유한 자원과 역량의 차이로 인해 상당한 격차가 발생한 상황(빈익빈 부익부)이므로, 대학별 현실을 반영한 단계적 제도 구축이 중요함

- (전담조직 설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는 단순히 1~2개의 창업 강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차원의 접근이 아니므로 학사제도 전반의 이해와 조정이 가능한 전담기구의 설치 및 기존 전담조직의 역할 강화가 반드시 필요
 - 현재 많은 대학들이 '창업교육센터'를 설치하고 있으나 일부 대학의 경우 창업전담조직이 부재하여 책임과 권한을 가진 전담조직의 설치가 필요하며, 또한 학사제도 구축 및 조정 등이 논의될 수 있는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등의 설치가 요구됨

- 또한,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대학 내 교육과정 개편에 관한 의사결정기구(교무처, 교육과정심의위원회, 각 단과대학 등)의 이해와 협조가 원활하게 이뤄져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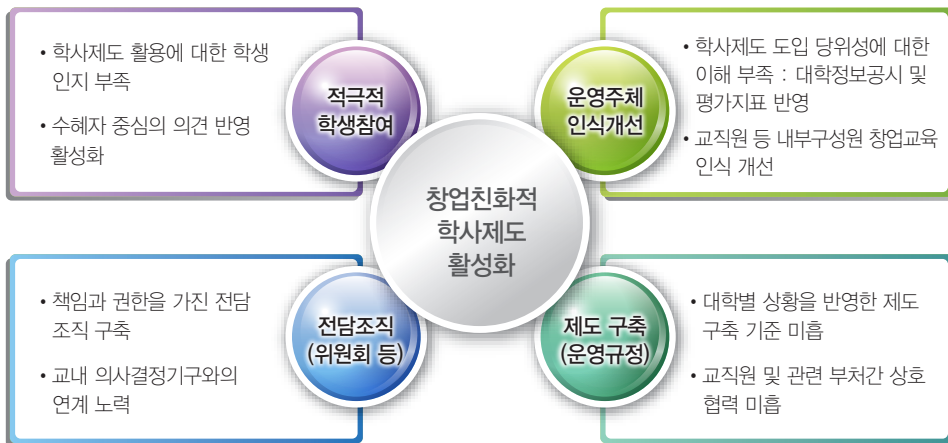
〈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설치 〉

- ‘창업휴학제’ 남용 방지,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심의 및 평가, 관리 감독 등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대학 내부에 관련 내용을 전담할 수 있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 조직의 설치가 요구됨

예시 1 창업교육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교무처장, 산학협력단장, 기획처장 등으로 구성하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 및 심의·감독 전반을 관할

예시 2 교과과정 운영위원회(또는 교육과정심의위원회 등)에 창업교육센터장 등 관련 인력을 참여하게 함으로써 교과과정 내에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 대한 내용이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

- (수혜자 인식개선 및 적극 참여)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의 수혜자인 대학생이 동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부족하며 이로 인해 능동적인 참여 의식이 부족한 상황으로 수혜자인 학생의 요구와 의견에 대한 반영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체계구축 필요(제도 홍보 등 필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



다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운영규정 사례

- (창업휴학제) 창업휴학제 기간과 일반 휴학제와의 연계 여부, 창업휴학제 신청 자격요건(교내 창업강좌 일정 조건 이수 등), 창업휴학제 심의 및 점검 기구 설치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운영
- (미흡 사례) 다수의 대학이 창업휴학 운영 기간은 명시하고 있으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창업휴학제 신청자격 요건」 및 「심의 및 관리전담 위원회 설치」 등의 보완이 요구됨

〈 창업휴학제 운영 규정 미흡 사례 〉

미흡

- '창업휴학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신청 자격요건 명시와 관리 감독 등 효과적 운영을 위해서는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이 필요하나 설치 규정 반영 미흡

예시 1 '창업휴학제'의 신청 내용을 심의, 평가 및 관리 감독할 수 있는 전담조직(기존 조직 활용 또는 신규 위원회 설치)이 미흡

예시 2 '창업휴학제'의 시행 및 운영기간은 학칙에 명시되어 있으나, '창업휴학'을 신청하는 학생들의 자격 요건에 대한 내용이 없음

TIP 창업휴학 절차 [예시]

(학생) 교무처로 창업휴학 신청 → (교무처) 창업교육센터로 의뢰 → (창업교육센터) 창업교육 운영위원회를 통해 검증 → (창업교육센터) 교무처로 확인사항 통보 → (교무처) 휴학승인

〈 창업휴학제 운영 규정 우수 사례 〉

우수

제0조(학생창업 휴학) ① 본 대학 학생은 휴학사유가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2년(4학기)까지 연속으로 휴학할 수 있다.

② 창업휴학의 대상이 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한다. 단, 관련전공 분야의 창업이 아니더라도 창업휴학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용 가능하다.

③ 창업휴학기간은 본 대학의 일반휴학제도에서 허용된 기간과 별도의 기간이며 일반휴학제도와 연계 또는 별도로 신청가능하다.

④ 학생창업자는 창업휴학 시 재학생 자격으로 받을 수 있었던 시설 이용 등의 혜택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0조(학생창업 휴학 신청 자격요건) 학생창업 휴학은 신청학생이 창업기업의 대표(공동대표까지 포함)로 되는 경우에 한하여 신청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자격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한다.

1.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동시에 대학에서 제공하는 창업교육과정(정규교과)을 6학점 이상 수강한 학생

2. 2학기 이상을 이수하고, 6개월 이상 창업동아리 활동을 한 학생으로 교내외 창업경진대회 참가자

3. 창업교육과정과 창업동아리 활동을 수행하지 않은 학생의 경우라도 주관부서의 판단에 따라 창업휴학 기간에 창업교육과정이나 창업동아리 활동을 추후 병행할 수 있다.

제0조(창업휴학 신청) ① 창업활동을 목적으로 휴학하고자 하는 학생은 다음 각 호의 신청 서류를 구비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한다.

1. 창업휴학 신청서
2. 창업휴학 사업계획서
3. 사업자등록증
4. 기타 심의에 필요한 자료

② 본 대학은 학생창업휴학의 전제요건으로 주관부서에서 지정한 창업 강좌 중 일정과목의 이수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창업휴학 신청은 일반 휴학과 동일하게 매 학기별로 신청한다.

제0조(창업휴학 승인) 주관부서에서는 접수된 창업휴학 신청에 대해 지도교수 확인 및 현장점검을 실시한 후 관련부서의 절차를 거쳐 승인 결과를 학생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실습」과 실제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창업현장실습」으로 구분

- (창업실습) 「창업실습」의 경우 기존 창업동아리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고 학점인정의 논리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대학별 표준 운영 커리큘럼(지도교수 배정, 강의계획서, 차별화 된 교과목 명 등)을 작성하고 지도교수 관리 등의 체계적인 학점관리방안이 마련이 필요
- (창업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실제 창업의지가 있는 학생을 선발하여 창업으로 인한 이탈을 방지하도록 유도하며, 창업활동이 효과적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TIP 현장실습지도에 준하여 전임교원의 창업동아리 지도, 창업활동 지도 등 창업교육 지도 실적을 교원업적 평가에 반영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미흡 사례 〉

미흡

예시 1 창업대체학점 인정 과목 운영을 위한 세부 운영내용(지도교수의 시수 인정, 과목 주요 내용, 구체적 결과물, 평가방식 등) 마련 미흡

예시 2 '창업현장실습'을 일반 현장실습으로 잘못 이해하여 기존 기업체에 대한 현장실습 또는 인턴 등의 강좌로 잘못 운영하는 경우



우수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운영 규정 우수 사례 〉

제0조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의 목적) ①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함으로써 창업으로 인한 학업중단 최소화를 목적으로 한다.
 ②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함으로써 창업실습교과의 안정적인 정착에 기여한다.

제0조 (창업대체 학점제도 정의)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을 통해 학습목표의 달성이 가능한 경우 학점으로 인정하는 교육과정을 말한다.

제0조 (창업대체학점 인정) ① 창업대체 학점으로 인정되는 활동은 창업 준비활동과 창업활동으로 구분되며, 일정 조건의 충족 시 학점으로 인정한다.

- ② 창업준비활동은 창업교육센터에서 인정하는 창업동아리 형태로 운영되며 2~8학점 이수로 인정한다.
- ③ 창업활동은 실제 창업 형태로 운영되며 15 학점 이수로 인정한다.
- ④ 창업동아리 활동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전임교원을 지도교수로 등록하여야 한다.
 2. 4인 이상의 참여 학생으로 등록해야 하며, 최대 12인을 넘지 않아야 한다.
 3. 실습일지 및 시작품과 같이 창업동아리 활동을 평가할 수 있는 구체적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창업동아리 활동과 관련된 세부적인 내용은 창업동아리 규정에 의한다.
- ⑤ 창업대체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며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다.

제0조 (창업실습교과의 신청 및 승인) ① 창업실습교과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학기 개시 1개월 전까지 정해진 양식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는 심사를 통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학기 개시일 15일 전까지 학사운영 관련부서에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 ② 창업현장실습 교과 신청 또한 현장실습과 동일한 기간 및 절차로 진행한다.
- ③ 창업동아리가 "창업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이수 가능한 학점 수는 한 학기 3학점 이하, 연간 6학점 이내에서 운영한다.
- ④ 창업이 "창업현장실습" 교과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경우 학점을 인정하되 한 학기 15학점내에서 운영한다.
- ⑤ "창업현장실습"과 "현장실습" 교과목의 중복수행은 불가하지만 현장실습 인정 학점 범위 내에서 "현장실습" 수행 후 "창업현장실습"의 수행은 가능하다.
- ⑥ 창업실습교과의 학점은 P와 F로 부여한다.

제0조 (이수구분 및 학점) ① 창업실습교과의 이수구분 및 학점은 학과의 특성에 따라 정하며 주관부서의 창업 실습은 전공선택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다.

- ② 주관부서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은 실습기간과 인정학점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구분	교과목명	학점	실습기간	학기구분
창업실습	창업실습 I	2	15주 이상(120 시간)	학기제
	창업실습 II	2	15주 이상(120 시간)	학기제
	창업실습 III	2	15주 이상(120 시간)	학기제
	창업실습 IV	2	15주 이상(120 시간)	학기제
창업현장실습	창업현장실습	15	15주 이상(480 시간)	학기제

- ③ 창업실습 I, II, III, IV 교과 모두 주관부서에서 실시하는 창업경진대회에 출전하여야 한다.
- ④ 창업실습 II 교과는 추가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창업일반강좌를 이수하여야 한다.
- ⑤ 창업실습 III 교과는 추가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창업특강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⑥ 창업실습 IV 교과는 추가적으로 주관부서에서 지정하는 창업캠프에 참석하여야 한다.

제0조 (창업대체학점 신청요건) ① 창업현장실습은 4학기 이상 이수자에 한하여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신청은 신청 기간에 창업(현장)실습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0조 (창업(현장)실습 순회지도) 창업(현장)실습의 실태를 파악하고 창업(현장)실습 교육의 개선을 협의하기 위해 주관부서는 순회 지도를 실시한다.

1. 창업실습 I, II, III, IV : 실습기간 중 월 2회 이상.
2. 창업현장실습 : 실습기간 중 월 1회 이상

제0조 (창업(현장)실습일지 작성) 창업(현장)실습에 참가한 학생은 창업(현장) 실습일지를 기록하여 매주 주관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조 (창업(현장)실습 이수확인서 제출) 창업(현장)실습을 마친 후 1주 이내에 창업(현장)실습 보고서, 창업(현장) 실습 이수 학점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주관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창업대체 학점제에 의해 학점으로 인정되는 창업 관련 활동은 학업과의 연계성을 유지하기 위해 원칙적으로 학생의 전공(복수전공 포함)과 관련된 분야로 한정하나 필요에 따라서는 전공과 무관하게 창업교육 과정을 이수한 2~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할 수 있음(창업교육 운영위원회 심의 등)

- **(창업학점 교류제)** 현재 많은 대학들이 학점교류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창업강좌 교류에 대한 제도적인 어려움은 없으나, 우수한 창업강좌를 운영 중인 대학 및 관련 조직과의 교류 협력이 미흡하므로 LINC 대학 등 타 대학과의 강좌 교류 활성화 등이 요구됨



우수

〈 창업학점 교류제 운영 규정 우수 사례 〉

제0조 (목적) 이 규정은 창업학점 교류협정에 참여한 대학의 창업강좌 상호 수강 및 성적(학점)의 상호 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조 (창업강좌의 지정) ① 각 대학의 창업교육 담당자는 수강신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당 대학의 강좌를 창업강좌로 신청하고,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창업강좌로 지정한다.

② 운영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침에 따른다.

제0조 (자격) ① 창업학점 교류학생은 소속대학교에서 1학기 이상 수료하고 당해학기 등록을 필한 학생으로 한다.

② 소속대학교 재학기간 학업성적의 평균평점이 2.5(C+)이상이어야 한다.

③ 학칙에 의해 징계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한다.

제0조(수강범위) ① 학기 중 또는 방학 중에 개설 되어있는 창업강좌로 지정된 과목으로 한다.

② 신청학점은 각 대학의 학점교류 운영규정에 따른다.

③ 정규학기 학점교류는 최대 2학기(1년)에 한한다.

제0조 (추천 및 결정) 교류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의 소속 대학총장이 교류 해당 대학총장에게 추천하면, 당해 교류 대학총장은 자체심사를 거쳐 학점교류 학생으로 결정한다.

제0조 (수강료 납부) ① 수강료는 교류 대학 간 협정에 근거하여 정한다. 단, 정기학기는 소속대학교에 납부한 등록금으로 교류 해당 대학교에 정산을 하고, 계절학기는 본인이 직접 교류 해당 대학교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교류 학생의 교류기간에 필요한 수강료 이외의 비용일체는 교류 학생이 부담한다.

제0조 (취득학점 인정) ① 학점 교류 학생이 취득한 성적(학점)의 인정은 소속대학교 학부(과)와 학장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② 소속대학교에서 이미 이수한 과목의 성적(학점)취득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 학점 교류학생이 교류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일반선택으로 표기하되 평균평점 환산 시에는 포함하지 아니하고 전체취득 학점에 통산한다.

제0조 (학생지도 및 관리) ① 교류학생의 지도 및 관리는 소속대학교와 교류 해당 대학교간의 긴밀한 협조에 의해 공동으로 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류 해당 대학교는 교류학생에게 소속대학교 학생과 같이 도서관등 복지시설의 이용을 허락한다.

③ 교류학생은 교류 해당 대학교의 학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02 대학에서 창업 전문가 활용을 강화하는 제도?

1. 추진 목적

대학 내 창업교육 전문가 부족으로 인한 창업 교육 및 지원 활동의 제약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의 대학 내 활용을 통하여 전문적인 창업 지원 체계를 구축하기 위함

2. 창업 내·외부 전문가 활용 강화 추진 방안

가 전임교원 창업교육 우대

■ 전임교원 창업교육 우대방안

- (책임시수 인정 강화) 대학 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도입 등으로 전임교원을 활용한 창업강좌 활성화가 요구되므로 교내 전임교원의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참여에 따른 책임시수 인정 강화
 - 대학 내 전임교원이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 강좌를 개설할 경우 전임교원 기본 시수의 일부 또는 100%를 인정

TIP '창업실습' 및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교내 창업전담기관 또는 외부 창업전문가와의 공동 팀티칭 또는 학생들의 자발적인 학습으로 이뤄지므로 일반적인 전임교원 기본 시수에서 적절한 비율을 인정하는 것이 합리적

예시 1 2학점 '창업실습'의 경우 해당 강좌 전임교원 책임시수 50% 인정

예시 2 '창업현장실습'의 경우 해당 강좌 전임교원 책임시수를 '창업교육 학사제도 운영위원회'를 통해 산정·부여

- (공동 팀티칭 우대) 대부분의 전임교원의 경우 창업교육에 대한 실제적인 경험이 부족하므로, 창업 경험을 보유한 외부 전문가와의 공동 티칭을 장려하고, 해당 과목에 대한 책임시수를 적절하게 인정함으로써 강좌운영에 대한 책임감 부여

TIP 학생들이 다양한 사례 및 전문성을 학습할 수 있도록 다수의 외부전문가와 공동 팀티칭 시 기본 시수 인정비율을 소수의 외부전문가와의 공동 팀티칭시 보다 높게 부여하는 것이 바람직

나 산학협력중점교원 창업 교육 활용 강화

■ 산학협력중점교원의 창업교육 활용 강화방안

- (필요성) 대학 내 산학협력중점교수를 활용하여 효과적인 창업교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 중점교원의 역량 강화가 반드시 필요
- (추진방안)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 시 창업교육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이수 및 관련 자격, 창업 멘토링, 창업지도(학생 창업 등록시), 창업동아리 지도 등을 업적평가에 반영

TIP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창업 동아리 지도 및 멘토링 등을 업적평가에 반영함으로써 창업교육 및 지도에 대한 동기부여 필요

〈 창업교수 역량 강화 추진 예시〉

-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업적평가 시 창업교수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이수(연간 1회 이상), 창업 멘토링 등의 활동을 실적으로 인정

〈 창업멘토링 역할 확대 추진 예시〉

- 창업동아리 등에 대한 창업 상담 건수를 해당 교수의 실적으로 인정하여 장려

다 창업교육 전담교수 및 겸임교수 활용

■ 창업교육 전담교수 활용방안

- (정의) 대학 내 전임교원(산학협력중점교수 포함)으로 창업교육 활동을 중점 추진하고, 창업교육 관련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 (추진방안) 대학 내 창업교육 및 창업멘토링 등을 전담하여 수행하며, 연구 및 산학협력 기능을 배제하고 순수한 창업교육 및 멘토링 전담교수 형태로 운영
- (채용 및 활용) 창업교육 전담교수는 기본적으로 석사이상(창업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학사이상(창업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창업교육 및 멘토링을 주요업무로 활용

- 강의전담 또는 연구전담교수 트랙으로 대학별 자율적으로 채용하며, 산학협력 기능보다는 창업교육 강의 및 멘토링이 주된 업무로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
- ※ 창업교육전담교수는 전임교원의 형태로 채용하여 겸임/초빙교수 등의 비전임형태와 구별

▣ 창업겸임교수 활용방안

- (정의) 창업이나 관련 경험을 소지한 외부 전문가로서 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비전임교원

TIP '기존 대학별 전공에 따라 겸임 또는 초빙 등의 비전임 교원을 선발하고 있으나 대부분 해당 전공에 대한 박사학위(4년제의 경우)를 요구하고 있어 실무 전문가의 참여가 제한됨으로 창업교육을 중점적으로 수행하는 교원인 경우 실무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채용

- (채용 및 활용) 창업겸임교수는 창업교육 영역 내 실무전문가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로 운영하되,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선발

- 창업겸임교수는 기본적으로 석사이상(창업분야 실무경력 5년 이상 또는 3년 이상의 실제 기업운영 경험을 보유한 자) 또는 학사이상(창업분야 실무경력 10년 이상)의 경력을 소지한 자를 대상으로 선발 권장

TIP '창업겸임교수는 비전임교원의 형태로 채용하되, 구체적인 채용형태 및 조건을 대학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운영

II

대학생 창업 도전을 위한 환경 조성

03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여 학생창업기업에 투자하는 절차?



1. 추진 목적

대학이 보유한 적립한 자금을 학생 창업에 투자함으로써 기존의 적립금 활용 범위를 확대하고 기회를 창출하는데 있음



2. 대학 적립금 활용 방안

가

대학 적립금 투자방법

▣ 대학 적립금 개요 및 투자방법

- (개요) 사립학교법 개정(제 32조 2 제3항 제2호)으로 대학 적립금의 10분의 1한도에서 해당대학 교육기관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이 개발한 신기술 및 특허 등으로 창업한 벤처 기업에 투자가 가능함
 - ※ 학생창업기업 사업화 · 활성화를 위하여 대학 적립금을 기반으로 한 투자 활성화가 필요
- (참여 주체) 대학과 해당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창업 기업
- (투자 방법) 대학이 신기술을 기반으로 벤처 창업을 한 학생 창업 기업에게 직접 또는 간접투자 방법을 선택하여 대학 적립금을 투자
 - ① 직접 투자 : 투자의 주체인 대학이 내부에 투자의 프로세스와 의사결정 및 사후관리의 기본적인 시스템(조직, 인력, 규정 등)을 갖추고, 대학기술에 기반 한 우수 학생창업기업을 발굴하여 투자
 - ※ 직접투자 가능 형태: 독자적인 프로세스를 통한 단독투자 형태와 타 기관(기업, 개인 등)과 연계하여 투자대상 학생창업기업에 공동으로 투자하는 형태 모두 가능
 - ※ 직접 투자 원칙: 투자주체인 대학이 반드시 최소 이상의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전담부서를 편제해야 하며, 외부 전문인력을 포함하는 기금운용 및 프로세스를 갖추어야 함.



[직접투자 프로세스]

② 간접 투자: 간접투자(외부운용)는 아래의 기관에 투자하는 것을 말함

- ※ 간접 투자 기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근거한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여신전문금융업법에 근거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신기술금융사업자),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한국벤처투자조합(모태펀드)
- ※ 간접 투자 원칙 : 외부 전문기관의 활용과 투자방식의 다양화를 통한 자금운용의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여야 하며, 위탁투자기관은 객관적이고 투명한 기준 및 절차에 따라 투자기업을 선정하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해야 함. 또한, 간접투자(투자조합출자)의 규모는 조합(펀드)의 성격, 위험분산효과, 운용기법, 수익·비용 측면 등을 고려하여 정하고, 전략적 자금운용 계획에 따라 정함.



[간접투자 프로세스]



나 산학협력단 적립금 투자방법

▣ 산학협력단 적립금 개요 및 투자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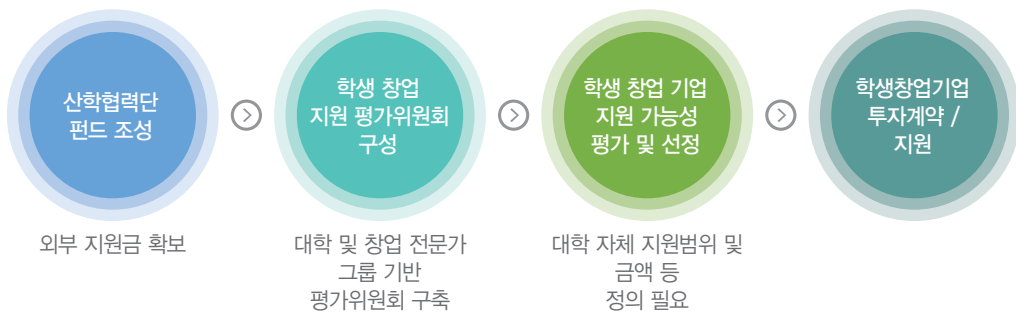
- (개요) 산학협력단 운영차익을 처분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적립목적에 따라 연구적립금, 건축적립금, 장학적립금, 기타적립금이 있음

TIP 대학 적립금 활용이 어려울 경우, 산학협력단에서 보유한 적립금을 일정 금액 활용함으로써 학생 창업 기업 지원

- (운영 주체) 산학협력단
- (지원 대상) 대학에 적을 두고 있는 학생의 신기술에 기반하여 창업한 학생 창업기업
- (핵심 고려사항) 학생 지원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일정금액의 학생 창업 기업에 대한 지원이 가능함을 규정화 필요
 - 목적 정의 / 지원 성격 정의 / 지원에 따른 이윤 추구 방식(지분 참여 등) 정의 필요
 - ※ 예시) 산학협력단 적립금 활용 목적 : 산학협력단 적립금은 대학 내 교직원의 지원과 학생창업 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활용할 수 있음
 - ※ 예시) 산학협력단 적립금 지원 성격 : 학생창업기업이 산학협력단 적립금을 지원 받기위해서는 투자위원회의 평가를 거쳐야 하며, 지분 투자의 형태를 따름
 - ※ 예시) 산학협력단 적립금 지원에 따른 이윤 추구 : 산학협력단 적립금 지원 규정에 따라 지분 투자 후 수익에 대한 배당 등의 이윤 추구를 할 수 있으며, 산학협력단과 학생창업기업의 계약사항에 준함
- (운영 방법) 직접 투자 또는 창업지원 펀드 조성
 - ① 직접투자 : 대학 적립금 부분의 직접투자 방식과 동일
 - ② 창업지원펀드 : 산학협력단 적립금 일부 + 외부 기업 협력금 또는 정부 지원금을 기반으로 펀드 조성
 - 산학협력단 자금 운영 및 학생 지원을 통한 학생창업기업 활성화 유도
 - 산학협력단 펀드의 학생창업기업 투자는 투자평가위원회의 평가를 기반으로 결정
 - ※ 예시) 산학협력단 적립금 1억 원 투자 + 외부 지원금 1억 원 투자 기반 산학협력단 학생창업지원 펀드 운용

– 창업지원펀드 운영 절차

- (1) 산학협력단 적립금을 기반 하여 외부 정책 자금 및 기업 지원 자금을 유치하여 학생 창업 지원을 위한 펀드를 조성
- (2) 조성된 펀드는 운영 및 학생 창업 지원 대상 선발 등 관리를 위한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펀드 지원의 투명성을 제고
- (3) 학생 창업 지원인 경우 선정 이후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한 만큼 투자 이후 대학, 기업 전문가로 구성된 멘토링을 지속적으로 실시



TIP 대학 적립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대학 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2012, 교육과학기술부)」를 기반으로 운영 방안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

투자지침서의 주요 구성

구분	주요내용	
개요	- 투자적립금 연혁, 적립금 특징, 주요사업, 운용규모 등 - 투자지침의 성격과 의의 및 효력 등 - 적립금 투자의 목적 및 원칙	
적립금의 벤처투자 관계 법령 및 규정	- 적립금의 학생창업투자와 관련한 법규체계 및 내용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	- 주관부서 및 협력부서 지정 - 역할 및 상호 협업체계	
투자절차 및 투자의사결정	투자심의위원회	- 투자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 투자 심의의 프로세스 및 의사결정 체계
	투자대상의 범위	- 투자대상 벤처기업의 요건
	투자자산	- 투자자산의 운영방법(직접투자, 간접투자) - 회수된 자산의 관리
사후관리 및 행위준칙	사후관리	- 투자기업에 대한 Value up - 투자기업에 대한 주식 의결권(보통주) 행사 원칙, 위임 등 - 투자자산의 회수에 관한 절차와 회수방법
	감사 및 공시	- 감사 및 공시 내용, 절차
	행위준칙	- 자산운용담당자가 지켜야 할 의무

04 대학의 지적재산권을 학생창업과 연계하는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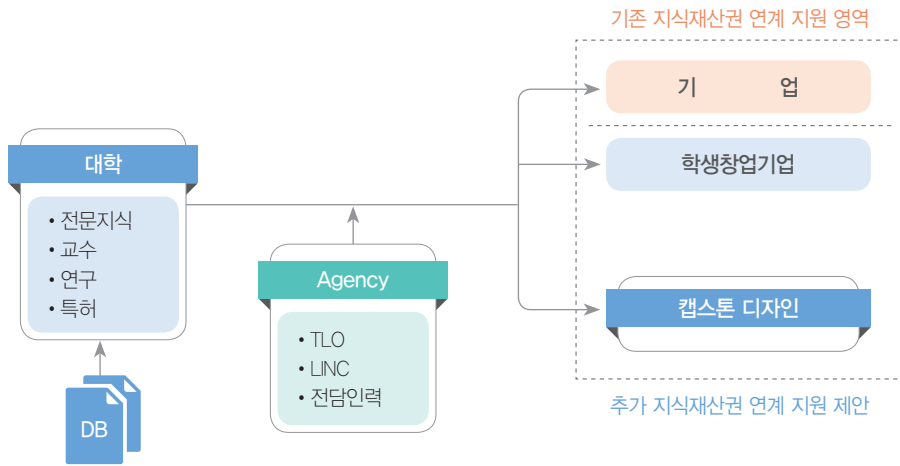
1. 추진 목적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학생창업 시 지적재산권 활용을 통한 기술적 도움을 주고, 학생 캡스톤디자인과 연계함으로써, 시제품 개발에 지원

2. 지적재산권 학생 연계 방안

가 지적재산권 연계조직 필요성 및 역할

- **(필요성)** 현재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DB는 구축하고 있으나, 실제 활용해야할 주체인 교수, 학생, 동아리 등이 기술에 대한 개념, 용어, 보유 주체 등을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음으로써 활용하기 어려운 문제점 발생
- **(개요)**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학생 기업 또는 캡스톤디자인 등 활용이 필요한 주체에게 지적재산권 연계 및 코칭을 해줄 수 있는 연계조직을 구축함으로써,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과 학생기업/캡스톤디자인 간의 차이를 줄여, 학생기업/캡스톤디자인 프로그램에 사용될 기술을 적절히 매칭할 수 있도록 운영
- **(운영 주체)** 대학 지적재산권 운영 주체는 대학의 지적재산권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산학협력단, TLO, LINC 사업단, 창업교육센터 등)
- **(역할)** 대학 보유 지적재산권 DB 관리, 지적재산권 필요 수요층(학생기업, 캡스톤디자인, 대학 교수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정보 연계, 지적재산권 관련 활용 코칭, 지적재산권 활용에 대한 계약 지원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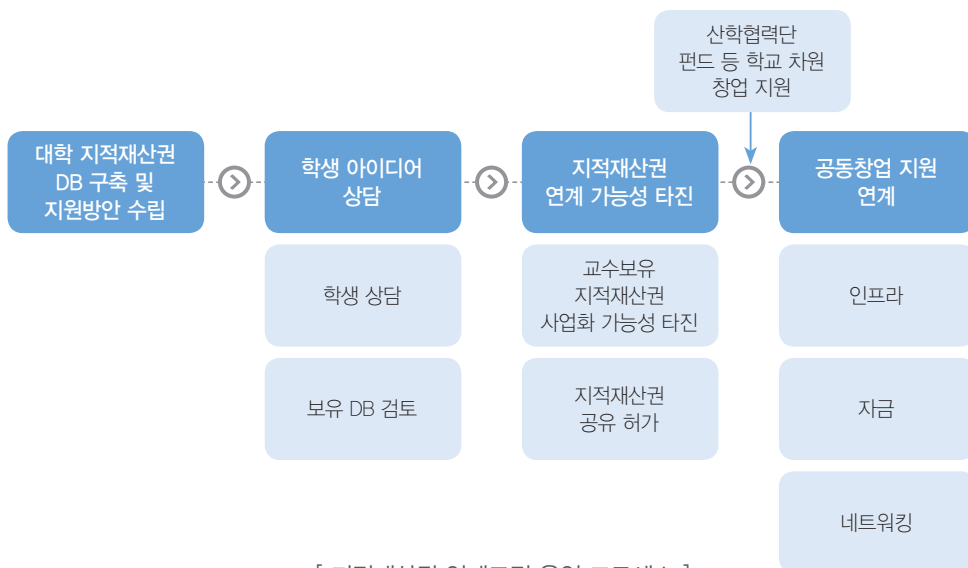


[지적재산권 연계조직 서비스 개념도]

▣ 지적재산권 연계 운영 절차

● 운영 절차

- (1) 대학(산학협력단)은 관련 사업계획 수립 및 지원 방안을 수립하여 연계조직에게 제공
- (2) 연계조직은 지적재산권 필요 학생에 대하여 지속적 상담을 통해 지원 가능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인지를 확대
- (3) 관련 지적재산권과 보유 교수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창업기업 유도과 창업 활동을 위한 지원 및 연계



[지적재산권 연계조직 운영 프로세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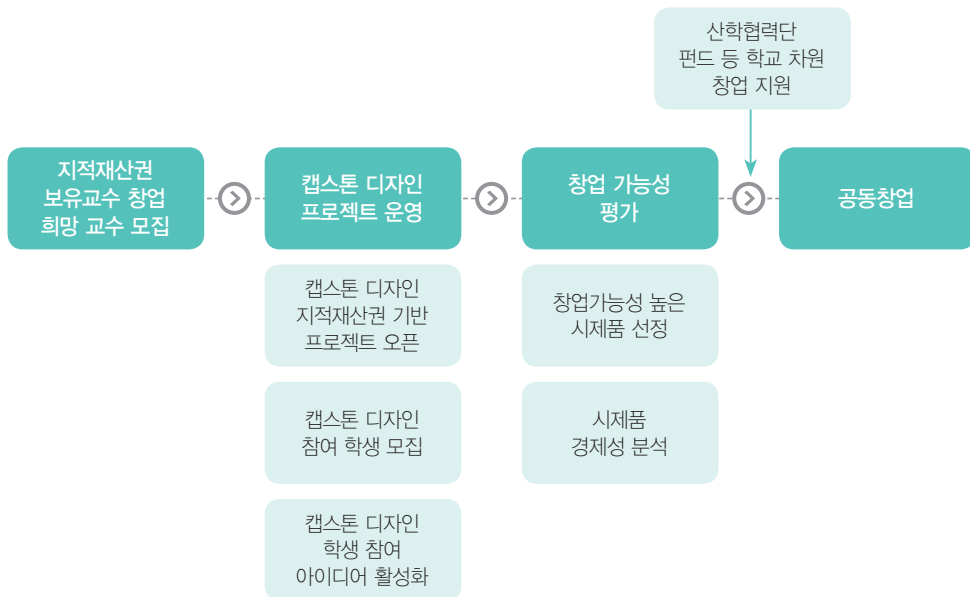
- **(핵심 고려사항)** 교수/학생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학점시수/인센티브 지원 등의 학교 지원이 필요하며, 교수/학생 간 관심 기술 참여를 위해 지적재산권 DB 공유
 - ※ 적절한 관심기술 매칭을 통해 대학보유 지적재산권 활성화에 도모

나

캡스톤디자인 연계 시제품 개발 및 학생 공동 창업지원

▣ 공동창업 지원 목적 및 절차

- **(목적)** 교수 보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캡스톤디자인 과정 내 시제품 개발 유도 및 공동 창업 지원
- **(참여 주체)**
 - 지적재산권 보유 창업 희망 교수: 창업 가능 기술 및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교수진 중 창의적 아이디어 기반의 창업을 희망하는 교수
 - 캡스톤디자인 참여 희망 학생: 캡스톤디자인 중 교수 보유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참여하고 향후 공동 창업을 희망하는 학생
 - 관련 시제품 창업 지원 학교 조직: 창의성과 경제성을 보유한 시제품에 대하여 학교 차원에서 보육 및 창업 지원을 해줄 수 있는 조직
- **(수행 절차)**
 - (1) 현재 대학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을 수집하여 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교육과정에 활용할 수 있는 후보 기술진을 추출
 - (2)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담당 교수와 교과목을 공동으로 설계하고 학생들이 캡스톤디자인 수업에 참여함으로써 기존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제품이나 서비스 시제품을 공동으로 개발함
 - (3) 이러한 시제품 중 시장성과 경쟁력을 외부 컨설턴트 및 변리사 등과 논의하여 교원과 학생이 공동으로 창업할 수 있는 기회로 연계함



[캡스톤디자인 기반 공동창업 프로세스]

- **(핵심 고려사항)** 대학 지적재산권 보유 리스트 확보와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교육과정 개발 시 교수에게 제공될 수 있는 인센티브 확보 등 필요

〈 교수 제공 인센티브 인정 예시 〉

– 적절한 학점시수 인정: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캡스톤디자인 교육과정 운영인 경우 책임시수에서 5시수(강의 시간 3시간 / 멘토링 2시간)로 인정함으로써 학생 지도를 보다 효과적으로 진행 할 수 있도록 운영

- 기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기술 이전 조건과 별개로 예비 창업자(학생 창업 포함)를 위한 무상 통상 실시 허가 지구(Complimentary Patent Round 등)를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 필요

05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기업을 육성하는 절차?

1. 추진 목적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 등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사회적기업은 대학의 다양한 전공 간 연계와 창의적 아이디어 발현 그리고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등을 통해 사업화 전(前)단계 까지 발현이 가능하므로 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을 제시

2. 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가 사회적기업 정의 및 관련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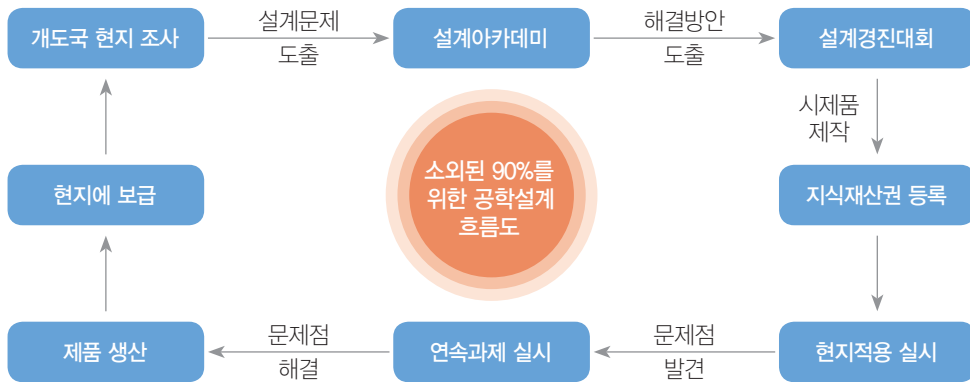
- (사회적기업) 영리기업과 비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영리기업이 주주나 소유자를 위해 이윤을 추구하는 것과는 달리, 사회적기업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
- (대학 연계 사회적 문제 해결 사례) 2006년 6월 경남 산청에 있는 만들레마을에 “대안기술센터”가 설립되면서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활동*” 시작

TIP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활동: 소외된 이웃을 위한 기술에 관심을 가진 대학생 등이 참여하여 적정 기술을 소외된 이웃에게 제공하는 활동(예: 라이프스트로우, 1리터의 빛 등)

〈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운영 사례 〉

- [KAIST] 크리스천과학기술포럼(CFSE) 정기포럼(KAIST, 2008.5.)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90% 사람들을 위한 설계” 공모계획을 밝힘으로써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
- [한동대] Global Engineering project (GEP) 프로그램은 교수와 학생들이 방학 중에 태국의 산간지역인 매해 지역을 방문하여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를 실시
- [한밭대] Global Capstone Design 프로그램은 공학설계 동아리인 “어프로텍”이 몽골의 울란바토르 지역을 방문하고 현지 사정을 파악한 후 공학설계를 실시

□ (프로그램 진행 절차)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 관련 교육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실행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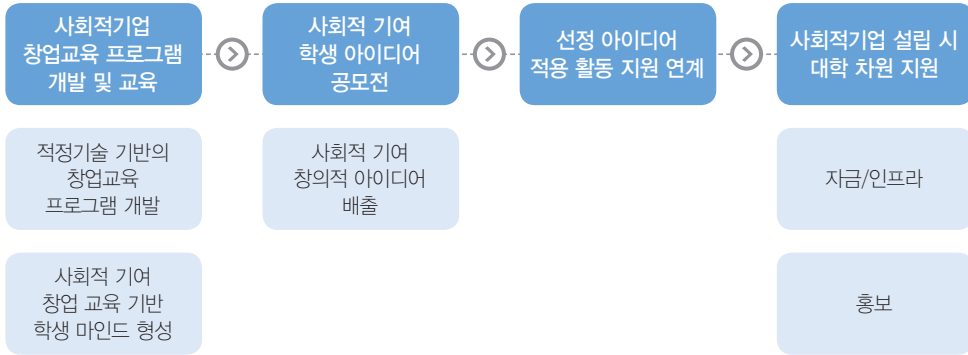


- 매년 여름방학 기간 중에 대학 캠퍼스에서 3~4일간 공학설계 아카데미가 진행되며 주요 내용은 공학입문설계, 설계 철학, “소외된 90%를 위한 공학설계”에 대한 개념 등을 교육하고 있음
- 또한 제시된 공학설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 설계를 팀별로 실시하며, 공학적 해결책에 대한 발표 및 시상을 하고 있음

나 대학 연계를 통한 사회적기업 육성 방안

- (목적) 대학이 보유한 다양한 인프라와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사회적기업 활성화 지원
- (운영 주체) 산학협력단, 창업교육센터
- (운영 내용) 사회적기업에 대한 정의 및 관련 창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 창업교육 프로그램 내 사회적 기여 및 적정기술 관련 교육 포함
 - 대학 내 사회적기업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 사회적 기여 아이디어에 대한 실제 적용 활동 연계 지원
 - 사회적기업 설립 시 대학 적립금 활용 및 펀드 조성 등을 통한 자금 및 인프라 등 지원

- (운영 절차) 사회적기업 활성화를 위한 마인드 형성과 활동 지원을 통한 기업 설립 지원



[운영 절차]

다 사회적기업의 장점

- (사회적기업 신규 채용자 인건비 지원) 복지·환경·문화 등 사회서비스를 취약계층에게 무료 또는 실비로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하여 신규로 인력을 채용하는 경우 지급, 취약계층 참여자에 대한 최저 임금 및 사회보험료를 지원
- (사회적기업 전문인력의 인건비 지원) 인증 사회적기업이 회계, 마케팅 분야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기업 당 3명의 범위 안에서 월 150만원 한도로 최장 3년간의 인건비를 지원
- (사회적기업의 사회보험료 지원) 2010년 신설, 일자리 창출 사업에 참여하지 않는 사회적기업에 한정하여 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를 최대 4년간 지원 및 근로기준법 준수 시 지원, 피고용인 전체에 대해 지원
- (사회적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고 있으며, 현재 연계기업이 사회적기업에 지출하는 비용은 지정 기부금에 포함되어 법인소득의 5%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산입이 인정되고, 사회적기업은 인증 후 4년간 법인세와 소득세가 50% 감면되는 세제혜택을 부여

06 대학의 다양한 창업관련 조직의 효율적 운영 방안?

1. 추진 배경 및 목적

대학 내 다양한 창업교육 및 창업지원 전담조직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해 대학별 보유한 역량과 자원을 고려하여 선택 가능한 최적의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 및 연계 방안을 제시

2. 운영현황 및 연계 모델

가 대학 내 창업지원주체 운영현황

▣ 창업지원 주체 운영현황 및 개선방안

- (창업교육 및 지원 조직의 증가) 「대학 창업교육 5개년 계획(12)」 및 「창업친화적 학사제도(13)」 등의 적극적인 추진으로 대학 내 창업지원조직 설치가 증가하면서 대학의 창업교육 활성화 분위기 고조
 - ※ '12년 LINC사업으로 전국 61개 창업교육센터가 출범하였으며, '15년 LINC사업 지원으로 설치된 67개 대학 이외에도 비LINC대학 창업교육센터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음
- (창업지원 주체 간 연계 및 효율성 저하) 대학 내 창업지원주체의 양적 증가에 비해 조직 간 상호 연계성 부족으로 운영프로그램 및 예산 중복 등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음
- 현재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창업교육 및 지원조직은 교육부의 창업교육센터(LINC), 중소 기업청의 창업지원단(창업선도대학지원사업), 창업보육센터, 기업가센터 등으로 요약할 수 있음

〈 대학 내 창업교육 전담조직 운영현황('14. 12월 기준)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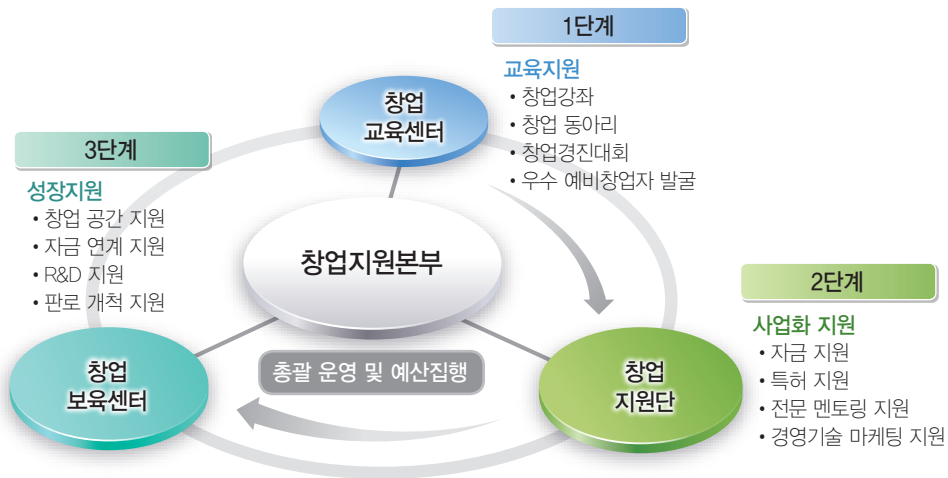
구분	창업교육센터	창업보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선도대학)	기업가센터
주무관청	교육부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청
출범년도	2012년	1992년	2011년	2014년
운영대학 수	168개 대학 링크(67), 비링크(101)	209개 대학	21개 대학	6개 대학
연간 예산(원)	25백만~354백만	건립/운영비 지원	최대 3,000백만	700백만 내외
대학 내 소속	LINC사업단 (또는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산학협력단 등	산학협력단
지원 대상	대학생	일반인	일반인, 대학생	대학생
주요 업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 창업교육 통합 수행 - 대학 내 관계부서 및 창업 유관 기관과 협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초기 창업자 창업 공간, 경영기술, 자금 등 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일반인 창업 교육/발굴 - 창업실행지원 - 성장촉진지원 - 비입주기업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창업사업 통합·조정 - 대학 독립적 창업 교육 및 지원시스템
장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 특화 - 대학별 확장성 - 대학간 사업연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초기 단계 지원 프로그램 - 경제성과 대외 인지도 획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교육에서 기업 성장까지 종합지원 - 대학생·일반인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지원전담 인력 확보 - 실전창업교육·창업 경험·사업화지원연계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 이후 창업 실행 및 성장촉진 관련 지원 미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생 배제 - 대학내 창업 교육 연계부족 - 대학내 낮은 위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인에 대한 지원 편중 - 운영대학 수의 한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영대학 적음 - 최대 6년 후 사업지원 중단 자생력 확보의 어려움

※ 상기 열거 조직외에 스마트창업터, 기업가정신 팩토리, 기술창업교육센터 등 다양한 창업관련 조직이 상존

나 ▶ 창업지원주체 연계

□ 대학 내 창업지원 주체 통합 연계(일원화) 모델

- (창업지원 관련 주체 통합 운영) 대학 내 창업지원 관련 조직을 ‘창업지원본부(가칭)’로 통합·일원화하여 창업교육과 보육, 사업화 및 성장지원까지 One-Stop으로 지원하는 모델
- (추진방안) 대학 내 창업교육센터, 창업지원단, 창업보육센터 등의 창업관련 조직을 1개 조직으로 통합하고, 업무 효율성 및 전문성을 증대하기 위해 동일인(본부장)이 해당 조직을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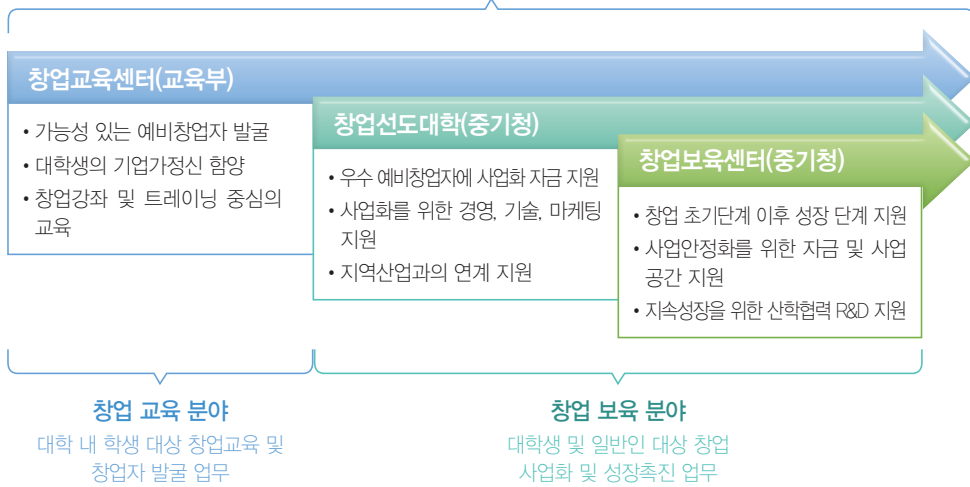
[통합형 일원화 모델 운영방안 예시]

□ 교육-보육기능별 전문성 강화를 통한 분리형 연계(이원화) 모델

- (핵심역량과 기능에 따른 전문화) 대학 내 창업교육 및 보육 등 조직 간 역할 및 기능의 분리를 통해 각 주체별 전문성을 강화하고 향후 통합형 모델로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
- (추진방안) 대학 내 창업교육 기능은 창업교육센터, 창업 사업화 지원 및 일반인 창업교육은 창업지원단, 성장 지원은 창업보육센터 등으로 기능별 분화하여 전문화된 지원체계 구축

TIP 창업선도대학의 경우 대학 내 창업교육 예산 비율이 7% 내외이므로 창업교육보다는 창업사업화 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효율적

화살표의 길이는 창업지원 사업 수혜 대상자 수



[분리형 이원화 모델 운영방안 예시]

□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 연계 모델

- (창업교육거점센터 활용 및 연계) 창업교육 및 지원을 위한 인력 및 예산 등이 부족한 초창기 대학의 경우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와 연계하여 다양한 창업교육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

* 창업교육거점센터: 2014년부터 운영 중인 산학협력중개센터의 4가지 핵심기능(현장실습 중개센터, 창업교육 거점센터, 산학협력 기업지원 종합 창구,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 교육) 중 해당 권역의 창업교육 확대 및 내실화 등을 위해 운영되는 센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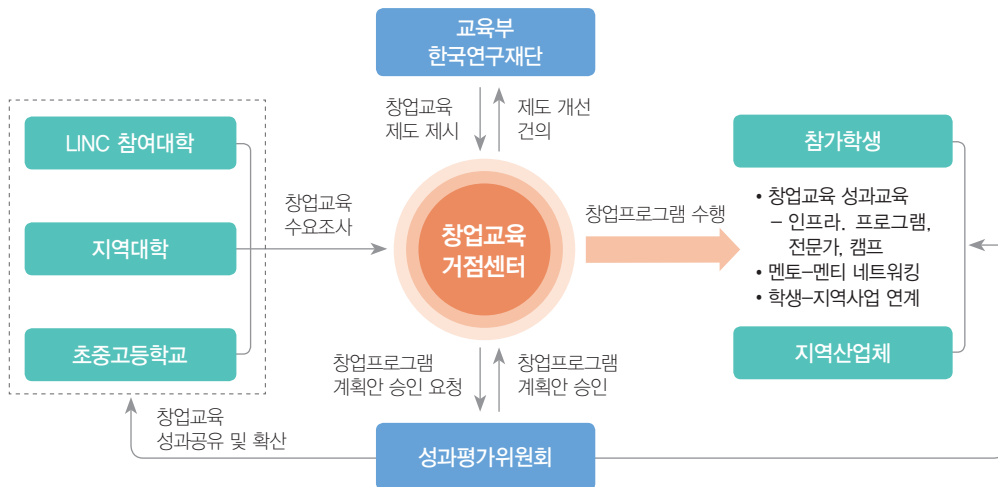
TIP 창업교육거점센터 : 수도권(성균관대), 충청권(충북대), 호남제주권(전남대), 대경강원권(경북대), 동남권(경상대)가 선정되어 운영 중

〈 산학협력중개센터(창업교육) 주요 프로그램 예시 〉

구분	프로그램
창업 인프라 조성	대학 간 창업학점교류제 협약체결
	창업 교과목 공유 및 강사 Pool 공유
	권역 내 비LINC대학 협력 및 컨설팅
창업 친화적 문화 조성	창업 수기공모, 창업콘서트 개최
	연합 창업캠프/창업스쿨 개최
	창업 페스티벌, 창업동아리 활동지원
창업교육 프로그램	학점인정 융합형 창업강좌 개설
	창업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창업 활동 지원	공동 멘토링, 지적재산권 교류
	캡스톤디자인 경매시장_사이버플랫폼 운영
	공동 창업경진대회 및 전시회 참가지원
초중고 연계 프로그램	자유학기제 및 비즈쿨, 창업체험 활동 등
	대학→초중고 창업동아리 연계
	학부모 인식제고(간담회 등)

TIP 창업교육거점센터 연계 모델은 창업교육 역량 및 성과가 우수한 대학으로 지정된 전국 5개 창업교육거점센터를 중심으로 창업강좌 교류 및 창업 관련 프로그램 공동개최 등의 창업교육 및 지원사업을 연계하여 운영할 경우 적용

- (추진방안)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의 주요 기능 및 사업과 연계하여 공동 운영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창업 교육 우수 콘텐츠 확보, 창업 관련 프로그램 운영의 효율성 제고 등 초창기 대학의 창업교육 역량 강화



[창업교육거점센터 연계 방안 예시(전남대)]



07 대학이 지역사회 연결망을 이용하는 방법?



1. 추진 목적

지역 사회가 보유한 자금(엔젤, VC), 기술자원 등 무형 네트워크 및 지역 내에 위치한 다양한 혁신주체(TP, SP, 지역기업 등)를 대학과 연계함으로써 지역대학의 창업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창업생태계 허브로 육성



2. 지자체 네트워크 활용 방안

가

지역사회 자금 및 기술(무형 네트워크) 현황

□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금 및 기술 현황

- (지자체 창업교육/지원프로그램 현황) 중앙정부의 창업교육 및 지원프로그램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 산하기관을 중심으로 (예비)창업자 육성사업을 추진하며, 창업교육과 연계한 자금 및 컨설팅, 공간 지원 등을 하고 있음

※ 국내 지자체 창업지원예산은 '11년(59,154억원) => '13년(65,04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창업교육 및 지원관련 다양한 사업이 추진되고 있음

< 주요 지방자치단체 창업지원 프로그램 >

구분	전담조직(프로그램)	지원기업	고용효과	비고
서울시	서울산업진흥원 : 청년창업(플러스)센터 (청년창업 1000프로젝트)	4,224개	5,166명	
경기도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G-창업프로젝트)	561개	1,267명	
부산시	부산경제진흥원 : 청년창업통합지원센터 (청년창업지원사업)	419개	-	5개 대학 연계
대전시	대전경제통상진흥원 (대학 및 청년창업500프로젝트)	365개	623명	14개 대학 연계
울산시	울산발전연구원 : 청년창업센터 (청년CEO육성사업)	470개	110명	4개 대학 연계

[자료출처] 정현수('14.8), 나라경제, KDI 경제정보센터, 각 지자체 조직 홈페이지 참조

- (중소기업청)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공단, 창업선도대학에서 창업관련 프로그램 운영
 - (개요) 「중소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통해 각종 정책자금(융자)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창업기업지원 자금(약 1,1조원)」과 「청년전용 창업 자금(약 2,100억원)」 등 운영
 - (자금 지원) 11개 지방 중소기업청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과 연계하여 창업기업 융자(약 5천만 원 내외) 및 성장단계별 자금 지원
 - (기타 지원) 전국 권역별 21개 ‘창업선도대학’ 지원 사업 등을 통해 지역별 대학 및 지자체와 연계한 창업교육, 금융, 사업화 지원, 컨설팅 등 지원

- (중소기업진흥공단 지역본부) 22개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다양한 자금 및 기술지원
 - (개요)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전국 22개 지역본부(수도권 제외)를 운영하며 중소기업 및 예비 창업자를 위한 다양한 자금 및 컨설팅 기술지원 등을 진행함
 -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전용창업자금(만 39세 이하로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창업을 준비중인 자, 기업 당 1억 원) 이외에도 개발기술사업화자금, 신 성장 기반자금, 협동화자금, 협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 등을 지원함
 - (기술지원) 중소기업 건강진단 사업, 신제품 개발지원, 외국 전문 인력채용 등 지원
 - (컨설팅지원) 성장기·정체기 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근본체질 강화와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중소기업 특성에 맞는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

- (미래창조과학부/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25개 출연(연) 및 12개 Off-line 센터 운영
 - (중소기업지원통합센터) 미래부 산하 25개 출연(연) 공동운영체계 구축, 12개 지역 Off-line 센터 및 중소기업 지원네트워크 구축
 - (Off-line 지역센터) 수도권 2개 및 지역별 10개 센터(충청, 대전, 전북, 광주/전남, 제주, 강원, 대구/경북, 울산, 부산, 경남 등)를 통해 기술애로 상담지원

● (지역신용보증재단) 전국 116개의 영업점을 기반으로 자금 지원

- (개요) 본점 16개, 지점, 출장소 100개를 포함하여 전국 116개의 영업점에서 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 추천받은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



12개 지역별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 ①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등 7개(서울)
- ②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9개(인천·경기)
- ③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등 5개(충청)
- ④ 한국기계연구원 등 19개(대전)
- ⑤ 국가핵융합연구소 등 9개(전북)
- ⑥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광주·전남)
- ⑦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등 4개(제주)
- ⑧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등 6개(강원)
- ⑨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7개(대구·경북)
- ⑩ 한국화학연구원 등 2개(울산)
- ⑪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4개(부산)
- ⑫ 한국전기연구원 등 2개(경남)

[미래창조과학부 중소기업지원 통합센터 현황]

- (청년창업 특례보증) 청년층의 적극적인 창업유도를 위한 보증상품으로 일정 평가등급 이상의 기업에게 최대 3억 원 이내의 보증 지원

● (기술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KIBO)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으로 청년 창업과 관련된 주요업무로 청년창업 특례보증,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예비 스타벤처기업 육성을 위한 특례 보증 등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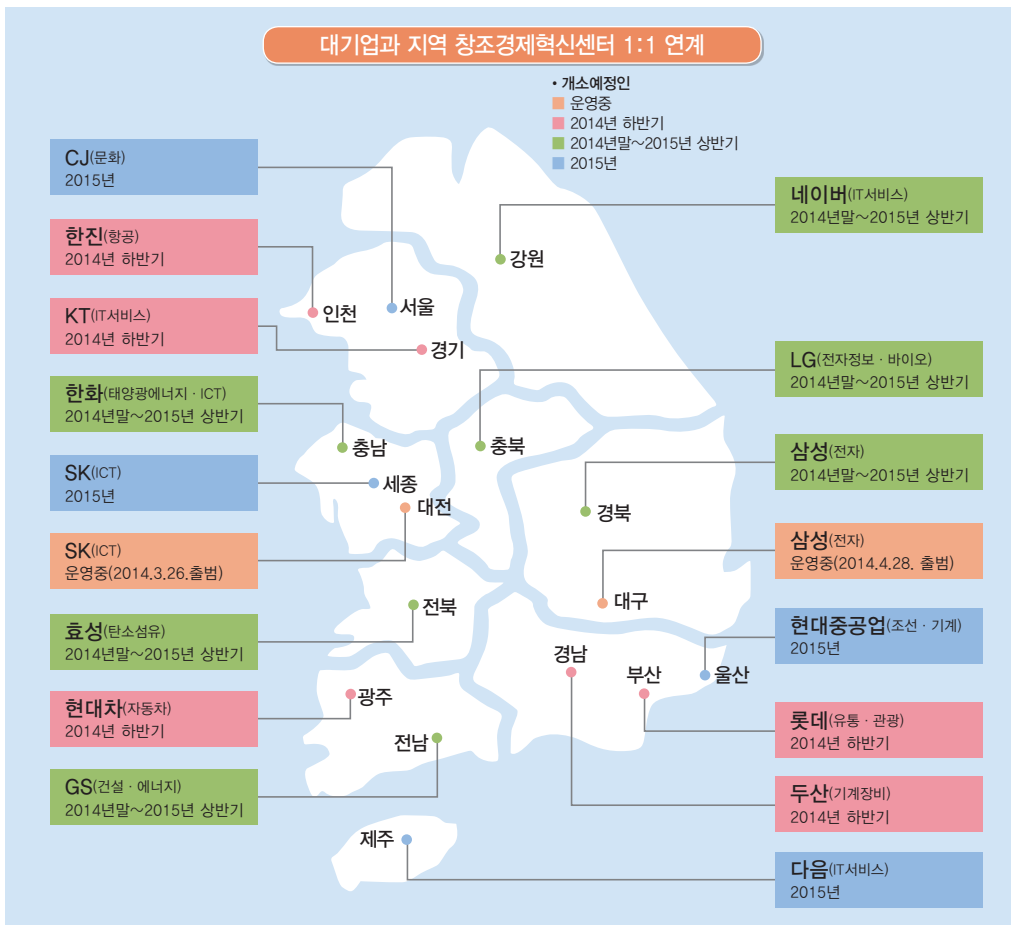
- (청년창업 특례보증) 창업 후 3년 이내의 청년기술 창업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각 기업당 3억원 이내로 보증
- (맞춤형 창업성장 프로그램) 창업 후 5년 이내의 특성별로 구분된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자금, 사업장 임차자금 및 시설자금은 5억 원 이내에서 보증지원
- (기술창업기업 특례보증) 창업 후 5년 이내의 기술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창업 및 운영을 위한 운전자금, 사업장 임차 자금 및 시설자금으로 각 기업 당 1억 원 이내로 보증
- (예비스타벤처기업 육성 특례보증) 창업 후 3년 초과 ~ 7년 이내의 기업으로 일정 평가등급(기술사업 평가 등급 BBB등급 이상)이상의 성장 도약단계 기업 지원

나 지역사회 혁신주체 (유형 네트워크) 현황

□ 지역 내 혁신주체(창조경제혁신센터, TP, 지역기업 등) 네트워크 현황

- (창조경제혁신센터) 정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방안」을 통해 지역의 창조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전국 17개 시·도에 설립
 - (개요) 지역별 산업과 연계한 대기업의 역량을 적극 활용하여 지역의 창업 지원, 중소기업 육성을 지원하여 지역별 창업 허브 구축을 추진

TIP 연계 대기업은 혁신센터에서 발굴한 사업 모델에 대해 상품 개발, 판로 확보, 해외시장 진출까지 지원하여 지역의 중소기업이 글로벌 전문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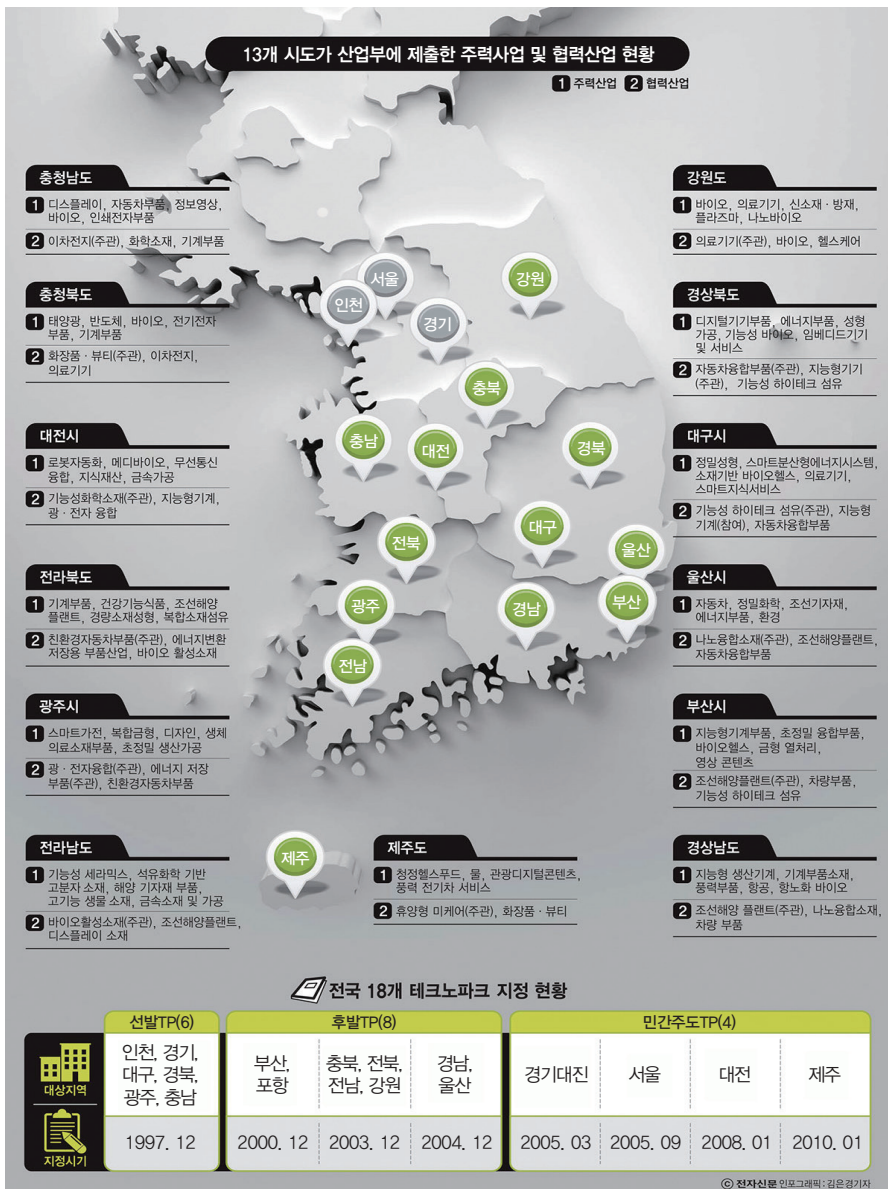
- **(사이언스 파크)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는 산학협력에 기초한 기술의 상업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조성된 지식 집약적 산업단지
 - 사이언스 파크는 지역사회의 지식역량을 집약하는 허브로서의 역할을 수행
 - 전국적으로 총 16개의 정부지정 테크노파크가 조성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민간개발 및 투자 유형의 사이언스파크가 확대되고 있는 추세임
 - ※ 사이언스 파크가 발전하여 파크 입주기업들과 외부기업 및 고객들과 연계되면서 해당 지역에 클러스터가 자연스럽게 생성됨

국내 주요 사이언스 파크 현황

구분	주요 내용
마곡 LG 사이언스 파크	- 2020년까지 약 4조원 투자하여 전자, 화학, 통신, 에너지와 바이오 분야의 창조적 혁신을 추구하는 최대 융·복합 연구단지 조성 추진(LG계열사 10개 조직, 2만 5천명의 연구인력 집결) - 중소벤처기업, 대학, 연구소 등 외부의 다양한 기술과 지식을 결합해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노베이션 공간 및 프로그램 운영 계획
홍릉 사이언스 파크	- 스웨덴 '시스타 사이언스 시티'를 벤치마킹한 도심형 사이언스 파크 모델 - 수도권 내 최대 연구단지(140여개 벤처기업과 9개 대학 5,000여명의 박사인력 보유)로 향후 기업과 민간부문 투자유치를 통해 확대를 추진 중
부산 센텀 사이언스 파크	- 2007년 순수 민간투자 자본으로 설립된 센텀 사이언스 파크는 첨단 지식서비스 및 영상 산업 단지로 조성되어 현재 다양한 국내외·IT 기업 및 첨단 R&D 기업들이 입주 - 초기 글로벌 MBA과정(School of Management) 유치를 통해 우수인력 양성, 인도 대학제휴를 통한 인도기업 유치 등을 추진하였으나 성과 미흡
수원 R&D 사이언스 파크	- 2019년까지 2천 300여억원을 투입하여 태양광, 연료전지, 청정생산, 신재생 에너지 등의 환경기술산업(ET)과 인간복제, 의학, 약학, 농업과학 등의 생명공학산업(BT), 신 금속, 고분자 소재, 극세사 섬유 등의 나노기술산업(NT) 연구시설 및 교육시설 구축 - 북수원은 광교테크노벨리의 NT 연구단지, 동수원은 아주대학병원 등의 BT산업, 남수원은 삼성전자를 바탕으로 한 IT산업, 서수원은 ET, BT 연구단지 등 R&D 연구단지 벨트를 구축, 수도권 첨단산업 클러스터를 주도할 계획
대구 사이언스 파크	- 2018년까지 순차적으로 개발하여 첨단기계, 차세대 전자통신, 미래형자동차, 로봇, 태양광, 신재생에너지 등 미래 성장산업을 이끄는 국가 산업 단지화
세종 사이언스 파크	- 사이언스 파크는 '리서치 파크', '리서치 코어', '벤처파크'로 구성되며 주변으로 대학과 지원 시설이 입주하는 '대학 캠퍼스'와 상업업무시설과 행복주택 건립 등 '대학 타운'이 조성될 예정 - '리서치 파크'에는 국책연구기관과 대기업 연구소가 들어서며, '리서치 코어'에는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벤처기업 입주를 위한 지식산업센터, 기업들을 지원한 R&D센터 등이 위치 하고, '벤처파크'에는 기술집약적 중소기업들이 중점적으로 입지할 계획임

● (테크노 파크) 지역 지식기반산업의 육성과 새로운 산업창출을 위하여 인적·물적 기술자원을 집적화한 산업기술단지

- (지역창조 경제 거점기관으로 변화) 최근 산업부는 지역 산업 육성 거점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테크노파크(TP)의 역할과 기능을 재편하고 창조경제시대를 맞아 TP(전국 18개)를 지역의 창조경제 거점기관으로 육성



전국 18개 테크노파크 지정 현황

	선발TP(6)	후발TP(8)			민간주도TP(4)			
대상지역	인천, 경기, 대구, 경북, 광주, 충남	부산, 포항	충북, 전북, 전남, 강원	경남, 울산	경기대진	서울	대전	제주
지정시기	1997. 12	2000. 12	2003. 12	2004. 12	2005. 03	2005. 09	2008. 01	2010. 01

© 전자산업 인포그래픽: 김은경기자

[전국 테크노파크 설치 현황]

- (지역 내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조직)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기술의 이전·사업화를 위한 전담기관이 설립되어 기술거래·이전 및 사업화까지 전주기 프로세스를 지원
 - (기술이전사업화전담조직/TLO, Technology Licensing Office) : 대학 혹은 공공연구소 내에서 기술이전 사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 (지역기술이전센터/RTTC) 지역 테크노파크(TP)내에서 기술이전·사업화를 담당하는 조직
 - (기술거래기관 및 사업화전문회사) 기술개발(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하는 회사
- (지역혁신센터/RIC) 기업 접근성이 좋은 지역의 대학에 기업활용도가 높은 고가의 장비를 구축하여 장비 활용, 기술개발 및 지도 이전, 사업화, 마케팅, 혁신기업 창업지원 등을 통합 지원하여 대학-기업 간의 혁신역량을 높이고 지역의 성장잠재력 향상을 지원



[지역혁신센터 주요 기능]

다

창업교육센터 연계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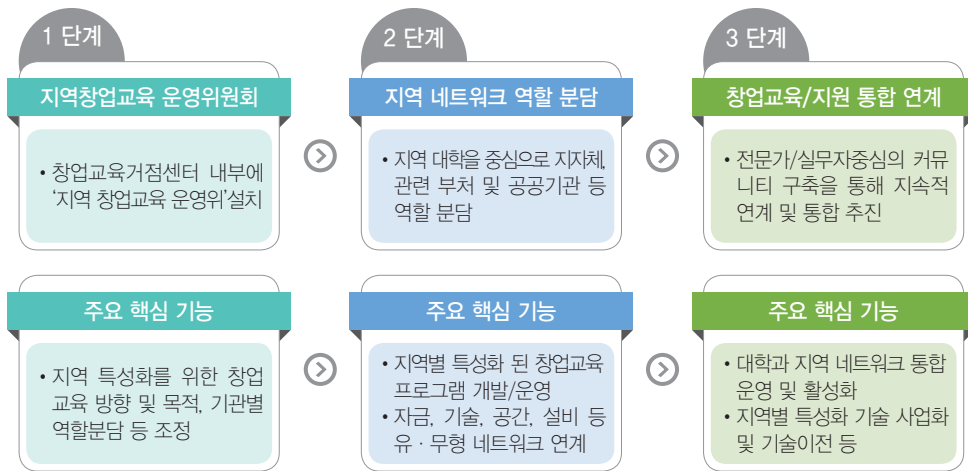
▣ 창업교육센터와 지역 사회 네트워크 연계 방안

- 지역대학 중심의 창업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사회가 보유한 자금 및 기술자원, 지역혁신주체 등을 연계하기 위해서는 수행조직(협의체)과 운영예산의 수반이 핵심 기제이므로 이를 중심으로 한 연계 프로세스 구축이 필요

- (1단계) 지역대학을 중심으로 한 ‘지역 창업교육 운영위원회’ 설치 및 활용
 - (운영위원회 구성) ‘지역 창업교육 운영위원회’는 창업교육거점센터를 보유한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센터지역협의회, 지방자치단체 창업교육 담당기관, 지방중소기업청 창업교육 기관, 기타 창업지원 유관기관 및 민간 전문가 등을 연계하며, 창업교육거점센터 내부에 설치함
 - (주요기능) 지역 특성화를 위한 창업교육 방향 및 목적, 운영프로그램 개발, 기관별 역할분담 및 통합 조정 및 심의 등을 담당
 - (운영예산) 운영위원회 예산은 참여기관의 분담금 형태로 운영

- (2단계) ‘지역 창업교육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기관별 역할 분담
 - (운영위원회) 지역 내 창업교육 통합 운영 심의 및 조정 역할 수행
 - (지역대학) 대학이 보유한 자원과 지역 산업을 중심으로 한 특성화된 창업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등 인력양성 및 공급 역할
 - (창업교육거점센터) 지역 내 창업교육 공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창업교육지역협의회) 창업교육 현장컨설팅 및 콘텐츠 교류 지원
 - (관련 부처 및 지자체) 운영 중인 지역 내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을 대학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 및 관련 프로그램 운영 지원
 - (공공기관 및 지역혁신주체) 자금, 기술, 컨설팅, 설비/공간 등 해당 기관이 보유한 유·무형 네트워크를 대학과 연계 운영 및 지원

- (3단계)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의 커뮤니티 구축으로 구체적이고 지속적인 창업교육과 지원 연계 및 통합 추진
 - (커뮤니티를 통한 지속적인 연계) 기존에 구축된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 또는 지역별 거점 대학의 창업교육센터 내부에 '지역별 창업교육 전문가 및 실무자 중심의 커뮤니티'를 구성하여 지속적인 연계 및 통합 추진



[단계별 지역창업교육 활성화 추진방안]

08 학생 아이디어와 대학 연구실을 연결하는 방법?

1. 추진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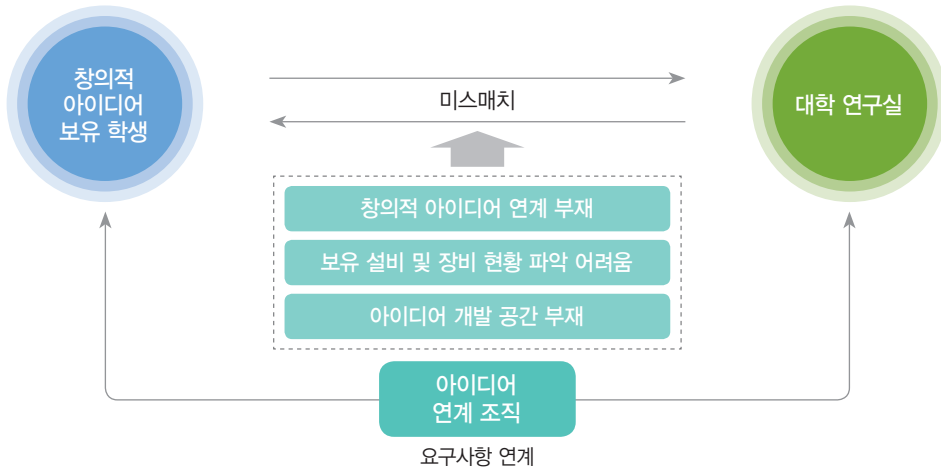
대학이 보유한 연구실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 아이디어를 연계함으로써, 시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등 효과적인 창업을 지원하기 위함

2. 대학 연구실 개방 추진 방안

가 전담 조직 운영

▣ 대학 연구실-학생 아이디어 매칭 담당 조직 운영

- (개요) 대학 내 산학협력단 또는 창업교육 전담조직 등 대학 내 학생 아이디어의 지식 재산권 획득 및 기술 이전, 사업화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학생과 대학연구실을 연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을 운영
 - 대학 연구실이 보유한 연구·실험 장비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활용하여 학생이 보유한 창의적 아이디어를 구현(시제품 또는 시제품 제작 등)할 수 있도록 지원
- (운영주체) 산학협력단(또는 창업교육센터 등 창업교육 전담조직)
- (주요 내용) 대학 내 장비와 연구인력을 보유한 연구실을 대상으로 실질적인 창업준비 및 지원사업이 가능하도록 지원
 - 창업교육센터는 대학 내 우수한 연구실과 학생 아이디어가 연계될 수 있는 지원방안을 수립하여 시행
 - 지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 등과 연계하여 실제 사업화 단계 지원
- (운영 대상) 교내 연구실을 보유한 교원 및 연구소 또는 창의적 아이디어 보유 학생 등



[학생 아이디어 매칭 조직 운영 필요성]

나 대학 연구실과 학생 아이디어 연계 절차

▣ 학생 아이디어 연계절차

- (추진 절차) 창의 아이디어 경진 대회를 통해 학생의 아이디어를 대학연구실과 연계를 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시제품 개발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

학생 아이디어와 대학 연구실 연계 시제품 개발/창업 지원 추진 절차 (예시)

핵심 프로세스	주요 내용	대상
1. 대학 특성 반영 사업화 가능 분야 선정	대학 보유 특성화 인프라 기반의 사업화 가능 분야 선정을 통한 사업화 지원 영역 선발	교수
2. 분야별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등	사업화 가능 분야별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학생 선발을 위한 창의 아이디어 경진대회 개최 - 지원 자격 고려 필요 - 선정 시 상금 및 지원 체계 고려 필요	대학생 및 대학원생
3. 특성화 인프라 보유 연구실과 아이디어 보유 학생 연계	특성화 인프라를 보유한 대학 연구실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학생 연계 - 사업화를 위한 지식재산권 공유 지침 마련 필요	대학 연구실과 경진대회 선발 학생
4. 시제품 개발 지원	대학연구실 기반 창의적 아이디어 시제품 개발 지원 체계 구축 및 지원	대학 연구실과 참여 학생
5. 학생창업 지원	개발 시제품에 대한 창업 시 대학 지원을 통한 성공 창업 기반 마련 - 지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 등과의 연계를 통한 실제 사업화 단계 지원 ※ 창업 지원에 대한 지분율 고려	학생창업 기업

- (고려 사항) 지원 예산, 지적재산권, 창업 지원에 따른 지분율 등에 대한 대학 내 자체 지침 마련 필요

09 학생을 위한 창업준비실 운영 방안?

1. 추진 목적

대학 보유 창업보육센터의 전문화 미흡 부분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생들의 창업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전문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성공창업의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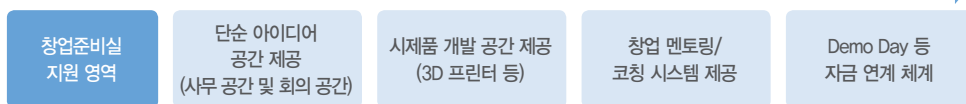
2. 창업준비실 설립 및 운영

가 창업준비실 설치

□ 창업준비실 개요 및 설립방법

- (개요) 창업을 준비하는 학생이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아이디어를 구체화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단순 아이디어 공유, 시제품 개발, 창업 멘토링 및 코칭 시스템 제공, Demo Day 등 자금 연계까지 공간 제공에서 창업 활동 지원까지 지원이 가능한 원스톱 예비 창업 준비 공간
- (설립방법) 대학소속(단독) 또는 지역대학 참여(공동) 등을 통해 운영
 - (단독설립) 대학소속으로 설립할 경우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해 적극적인 활용이 가능하고 가족회사를 통해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등 대학 자체 보유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 가능
 - (공동설립) 대학들이 참여하여 공동으로 설립할 경우 Idea Factory를 구축하여 협업이 가능하며 대학 간 창업정보 공유, 특성화된 인프라 활용 등 창업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창업 준비실 운영 방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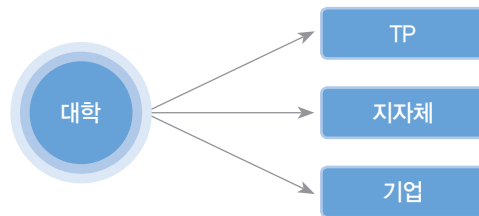


[창업 준비실 지원 서비스]

나 대학 단위 창업 준비실 운영

▣ 창업준비실 운영 방법

- (운영 주체) 대학 산학협력단
- (외부 참여 기관) 테크노 파크, 지자체, 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대학 내에 자체적으로 창업 준비실을 운영 가능



[대학-외부기관 간 연계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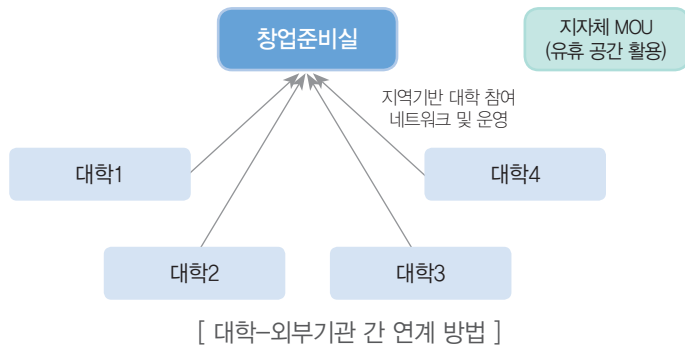
- (창업준비실 구성) 공동아이디어카페, 창업멘토링실, 회의실, 시제품제작 지원실, 창의교육 강의실, 1인 제작지원실,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창업준비실을 구성 · 운영
- (고려사항) 장 · 단점을 고려하여 소속 대학의 특성에 맞는 창업준비실 설치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 가능 • 대학보유 가족회사를 통해 차별화된 기업지원 서비스 제공 • 대학생 창업을 위한 근접성을 활용한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학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외부와의 네트워킹 미흡 • 전문가 멘토링 등 다양한 서비스 접근성이 떨어짐

다 대학 연합 창업준비실 운영

▣ 창업준비실 설치

- (운영 주체) 외부 위탁기관
- (외부 참여 기관) 지역 내 인근 대학이 지자체 유휴 공간을 공동으로 활용함으로써 창업 지식을 응집하여 성공가능성 제고



- (창업준비실 구성) 공동아이디어카페, 창업멘토링실, 회의실, 시제품제작 지원실, 창의교육 강의실, 1인 제작지원실, 창업보육센터 등 대학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형태에 따라 창업준비실을 구성·운영
- (고려사항) 장·단점을 고려하여 공동설립의 특성에 맞는 창업준비실 설치

장점	단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Idea Factory를 구축하여 협업 가능 • 대학 간 창업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여 시너지효과 제고 • 창업지원 노하우 공유를 통해 창업 성공률 향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창업자 아이디어 보호 및 사업 보안에 대한 노출 • 대학 간 이해관계에 따른 공간 운영 방법 사전 협의 필요

III

창업인식 개선

10 대학이 청소년층에 기업가정신을 확산할 수 있는 프로그램?



1. 추진 목적

자유학기제를 운영하는 중학교를 대상으로 창업교육센터가 가지고 있는 창업교육 콘텐츠와 네트워크 등을 제공하여 기업가정신을 확산하고 진로 선택에 고민하는 학생들에게 다양한 경험을 제공함으로써 자기 주도적인 진로탐색 기회 제공



2.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 운영 방법

가

자유학기제 정의 및 운영방법

▣ (자유학기제*) 중학교 교육과정 중 한 학기 동안 학생들이 중간·기말고사 등 시험부담에서 벗어나 꿈과 끼를 찾을 수 있도록 수업 운영을 토론, 실습 등 학생 참여형으로 개선하고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 활동이 가능하도록 교육과정을 유연하게 운영하는 제도

▣ (운영 방법) 대학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자유학기제와 연계 방법 제시

- (협력문화 조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해당 교육청, 대학의 창업교육센터와 중학교와의 MOU를 체결하여 협력적인 문화를 조성
 - (자유학기제 연계 TF 구성·운영) 교육청, 중학교(학년별, 교과별, 부서별), 대학 창업교육센터 교수진 등을 핵심 위원으로 구성



자유학기제의 취지에 맞는 기본교과 수업 및 자율과정 운영이 이루어지도록 역할과 지원체계 구축

- (오리엔테이션) 자유학기제 수업을 담당할 교사와 대학 창업교육센터의 교수진과 전문인력 등을 대상으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해 자유학기제를 이해하고 학교 특성을 파악하여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지원

TIP 구체적인 공통과정(기본교과)과 자율과정의 프로그램 설계와 운영 방법에 대해서 중학교와 창업교육센터가 긴밀하게 논의하여 결정

공통과정 및 자율과정 구성 예시

교시	요일	월~금
1~4 (오전)		<공통과정(기본교과)> (약 20~22시간) - 핵심성취기준 기반 수업 - (국어·영어·수학) 문제해결, 의사소통, 토론 등을 중심으로 한 수업 - (사회·과학 등)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을 중심으로 한 수업
5~7 (오후)		<자율과정> (약 12~14 시간) - 진로탐색 활동 - 동아리 활동 - 예술·체육 활동 - 학생 선택 프로그램

- 대체적으로 공통과정은 오전에, 자율과정은 오후에 배치하는 방식으로 교육과정을 편성할 수 있음

● 자유학기제 운영을 위한 유연한 교육과정 편성 운영

- 공통과정의 경우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등의 핵심성취기준 기반 수업으로 진행되기에 자율과정 운영에 참여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편성표 예시

자유학기제 교육과정		과목	주당수업시수
기본교과(22시간)		국어	4
		도덕	2
		사회	2
		수학	4
		영어	4
		과학	4
		기술·가정	2
합계			22
자율과정(11시간)	예술·체육 활동 (4시간)	체육	2
		음악	1
		미술	1
	선택과정 활동 (2시간)	진로와 독서	1
		기업가정신 스킬 함양	1
	진로탐색 활동 (2시간)	진로와 기업가정신	1
		SCEP	1
	동아리 활동 (3시간)	체육동아리	1
		창업동아리	1
		진로동아리	1
합계			11
특별활동(2시간)	방과 후 활동		2
합계			2

나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및 운영 주체 간 역할

■ 기업가정신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법

- 자율과정 중 선택과정 활동, 진로탐색 활동 그리고 동아리 활동 과정에 참여하여 프로그램 지원

- ① [선택과정 활동] 선택과정 활동 중 기업가정신 스킬 함양 중심으로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 직관력 등을 함양

예시 1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며, 12차시로 구성되어 트렌드 파악, 창의성의 발현, 아이디어의 이해 및 구체화 등으로 구성

- ② [진로탐색 활동] 진로탐색 활동 중 진로와 기업가정신이라는 과목으로 학생들의 진로활동 동기 부여와 기업가정신 함양을 목표로 운영

예시 1학기 과정으로 운영하며, 12차시로 구성되어 자기탐색, 직업의 이해, 창업가 체험(특강 및 사례), 창업의 과정 이해 등으로 구성

- ③ [동아리 활동] 창업동아리 연계 체험활동형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창업캠프 운영하여 기업가정신 역량 강화

예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며, 경제상식 함양, 모의 창업 체험(회사 만들기, 창업 아이템 선정, 비즈니스 모델 수립, 사업계획서 수립) 등으로 구성

- ④ [동아리 활동] 진로동아리 연계 체험활동형으로 운영하여 상시적으로 진로캠프를 운영하여 진로 의식 강화

예시 2박 3일 과정으로 운영하며, 자기이해, 직업탐색, 직업인 초청강의, 목표설정, 진로 콘서트 등으로 구성

□ 운영 주체 역할

- (교육청) 원활한 운영을 위한 예산지원 및 창업교육에 대한 인식개선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 강사섭외 인건비 및 운영비 활용을 위한 예산지원
 - 기업가정신 교육 도입 희망학교 모집 및 선발
 - 학부모 인식 개선프로그램 운영 및 지속적 홍보 활동
 - 담당교사 역량강화 워크숍 및 연수 운영
- (대학) 해당 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교육 도입 중학교 연간 프로그램 운영계획 수립 및 컨설팅 지원
 - 전문성을 갖춘 인력 발굴 및 멘토링 Pool 확보
 - 자유학기제 연간 운영계획 설계 지원
 - 원활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참여 및 교재 개발
 - 대학 내 취·창업 캠프 참여 기회 제공
- (중학교) 세부추진 방안에 대한 계획 수립 및 인적·물적자원 활용 방안 마련
 - 자유학기제 추진위원회 구성
 - 담당 교사 선발 및 학생 활동장소 등 교육 환경 조성
 - 대내외적 학생 창업 및 취업 동아리 활동 지원
 - 외부 인적/물적 자원 지원

11 대학이 청소년층에 교육 기부를 할 수 있는 방법?

1. 추진 목적

기업가정신 및 창업교육 관련 프로그램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교육 기부프로그램을 활용함으로써, 콘텐츠의 질적 측면과 양적 측면 강화

2. 교육기부 프로그램 연계 방안

가 교육기부센터 연계 및 창업 교육 활용

교육기부센터와 연계한 대학의 창업교육 활용방안

- (개요) 각 대학과 한국과학창의재단의 교육기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학생들에게 창업교육 콘텐츠를 다양하게 접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추진방안) 한국과학창의재단이 운영 중인 '교육기부센터'에 창업교육센터(또는 창업교육거점센터)에서 운영 중인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등록하여 기업가정신 교육 및 창업교육 기회를 확대
- (추진내용) 창업 우수 지원 대학을 비롯한 창업 교육에 관심이 있는 대학은 대학 내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 프로그램과 활동 지원 체계를 콘텐츠 화하여 교육기부센터에 제공
 - 지속적 창업교육 프로그램 피드백을 통한 콘텐츠의 양적, 질적 품질 확보 노력 수행
- (활성화 조건) 창업 우수 지원 대학(LINC 등)에서 우선적으로 관련 창업 콘텐츠를 교육기부센터에 제공함으로써, 지속적인 창업 콘텐츠의 대학별 재생산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것 필요

나 교육기부센터(www.teachforkorea.go.kr) 연계 활용 방법

□ 교육기부자 혜택

- 기업 · 대학 · 공공기관 등 교육기부자가 운영하는 프로그램에 대해 홍보
- 교육기부 수혜자 모집 및 관리 가능
- 교육기부 등록을 통해 기관 홍보 및 이미지 제고

□ 교육기부자 참여 프로세스



IV

문고 답하기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활성화 방안

Q1

● 매뉴얼에서는 많은 대학들이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데요, 창업휴학 및 대체학점 인정제, 창업학점 교류제도 등을 모두 의무적으로 시행해야 하나요?

Ans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는 대학 내 창업준비 및 창업활동으로 인한 학업단절 등을 방지하기 위해 기본 인프라를 구축하도록 장려하는 제도입니다. 대학 내 여건과 상황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모든 제도를 의무적으로 시행할 필요는 없습니다. 해당 대학에서 운영할 수 있는 제도부터 충분히 논의한 뒤 단계적으로 추진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2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창업친화적 학사제도 관련 규정들을 반드시 시행해야 하나요?

Ans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의 예시이며, 각 학교별로 적용할 수 있는 창업휴학제 및 창업대체학점 인정제, 창업강좌 학점교류제 등에 관련된 운영규정 및 시행규칙 등은 충분히 다를 수 있습니다. 매뉴얼의 적용 예시를 참고하여 대학 자체 규정을 신설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Q3

● 창업대체학점 인정제의 창업실습은 창업동아리의 창업준비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해주는 것인데요, 교내 기존 창업동아리와의 학점 부여 형평성 등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Ans

● 창업친화적 학사제도에서 제시되는 창업실습은 정규강좌로 개설된 강좌에서 창업준비활동을 동아리 형태로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러한 창업실습 강좌는 반드시 정규 학점강좌를 개설하고 운영 및 평가할 수 있는 전임교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며, 아울러 매주 정규학점강좌에서 요구하는 학습시간(2학점 과목의 경우 1주일에 2시간)을 통해 창업준비활동을 진행하며, 중간 및 최종 결과물을 제출받아 평가를 통해 학점을 부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학생들의 자유로운 창업동아리 활동과는 구별되며, 기존 창업동아리가 일정한 조건을 갖춰 정규 학점강좌를 이수하게 되면 학점으로 인정하는 것은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의 심의를 통해 해당 기준 등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4 : 창업현장실습은 기존 현장실습과 어떠한 점이 다른가요?

Ans : 창업실습과 창업현장실습은 재학생들의 창업 준비활동 및 창업활동 등을 학점으로 인정하여 창업과 학업의 병행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창업으로 인한 학업단절을 최소화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창업실습은 창업동아리 활동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제도이며, 창업현장실습은 대학 내 창업 교육 및 창업준비활동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로 창업을 통해 구현하고자 하는 학생들을 위한 제도입니다. 따라서 기존 기업 또는 타인의 초기 창업기업 등으로 보내는 현장실습과는 다른 개념이며, 본인의 창업 아이디어를 실제로 사업화하여 사업자등록 등의 법적 형태를 갖추고 창업활동을 영위하는 것을 말합니다. 해당 대학은 '학사제도 운영위원회' 등의 현장 실사를 통해 지속적인 창업 활동이 이뤄지고 있는지를 관리·평가하여 정규 학점을 부여하는 것을 말합니다.

Q&A 대학 적립금 활용 학생창업기업 투자

Q5 : 대학 본부에서 대학적립금을 학생창업자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나요?

Ans :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학생 창업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으로 사회적기업 또는 사회적 협동조합 설립 방안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공공조직 혹은 사익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민간 기업도 아니며, 제3섹터에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고 있는 조직이고, 민간과 공공자원을 통합해서 혁신적인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경제적 수익을 취하는 형태로 대학의 입장에서도 아주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Q6 : 본교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과 타교의 교원 또는 학생이 공동으로 창업한 기업에는 본교의 적립금 투자가 가능한가요?

Ans : 사립학교법에서 정하는 대학 적립금 투자 대상은 해당 대학의 소속 교원 또는 학생(재학생, 휴학생, 대학원생)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타교 소속 교원 또는 학생과 공동으로 창업한 경우 해당 기업의 법적 소유권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투자 시에는 학생창업지원이라는 투자목적에 따라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투자조건을 설정하시기 바랍니다.

Q7 : 본교에는 대학 적립금 운영지침이 없어 신규로 수립하고자 합니다. 참고가 될 만한 지침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 : 현재 대학 적립금을 활용하여 학생 창업 기업에 투자 및 활용에 관한 지침을 별도로 만들 경우에는 본 매뉴얼에서도 제시 하였듯이 많은 관련 운영 지침이 있으나 교육부(2012)의 「대학 적립금 벤처기업 투자지침서」를 참고하여 작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지원팀(042-869-6402)로 문의하시면 관련 자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Q&A 대학보유 지적재산권 학생창업 연계

Q8 : 본교에는 아직 학생 창업관련 기술이전관련 전담 부서(또는 팀)가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 : 우선, 학생창업 지원을 위해서 대학 내 지적재산권 활용과 기술이전에 따른 수익 사업을 할 수 있는 조직을 신설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산학협력단 소속 TLO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이 있다면, 기존 기업 지원 업무에서 그 대상을 교내 학생 창업으로 확대하여 시작하고 이후에 학생창업 지원을 위한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Q9 : 학생창업 지원을 위해 본교 교수가 보유한 특허나 노하우 등이 필요한 경우, 능동적인 교수 참여를 위한 유인책은 무엇이 있을까요?

Ans : 교수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위해서는 참여에 대한 합당한 인센티브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담당할 경우, 강의시간 시수와 멘토링 시수를 계상하여 책임시수를 책정해주는 정책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와 별개로 학생 창업을 위해 기술이 이전될 경우, 창업에 대한 노력(멘토링, 기술 이전 노하우 전수 등)을 고려하여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합니다.

Q&A 대학 내 창업지원주체 연계

Q10 : 매뉴얼에서는 대학 내 창업지원주체 연계방안 모델을 제시하고 있는데 반드시 이러한 유형으로 통합하거나 연계해야 하나요?

Ans : 2012년부터 시행된 산학협력선도대학(LINC)으로 지원받은 대학 들은 창업교육센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지원사업에 선정되지 못한 다수의 대학들은 자체 교비 예산과 인력 으로 창업교육을 진행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연계 모델들은 각 대학별로 보유한 자원과 역량을 고려한 효율적인 창업교육 및 지원에 도움이 되고자 예시적으로 모델을 제시한 것이므로 모든 대학에 반드시 적용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시된 유형을 참고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모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역사회 네트워크 활용

Q11

-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에 선정되지 않은 대학도 창업교육거점센터의 관련 사업들을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Ans

- 2014년부터 전국 5대 권역별로 설치된 창업교육거점센터(수도권(성균관대), 충청권(충북대), 호남제주권(전남대), 대경강원권(경북대), 동남권(경상대))은 해당 대학을 거점으로 하여 지역 내 창업교육 노하우와 경험을 전파·확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따라서 산학협력 선도대학으로 지원받지 못하는 대학들도 해당 권역별 창업교육거점센터와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거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 권역별 산학협력중개센터 현황 및 기능

권역	대학명	센터별 주요 기능	
수도권	성균관대	· 창업교육거점센터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충청권	충북대	· 현장실습중개센터 · 기업지원 종합창구	· 창업교육거점센터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호남제주권	전남대	· 창업교육거점센터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대경강원권	경북대	· 현장실습중개센터 · 기업지원 종합창구	· 창업교육거점센터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동남권	경상대	· 현장실습중개센터 · 산학협력단 역량 강화교육	· 창업교육거점센터

Q12

- 매뉴얼에서 제시하고 있는 ‘지역창업교육 운영위원회(가칭)’는 어떤 역할과 기능을 하나요?

Ans

- ‘지역창업교육 운영위원회(가칭)’는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창업교육 및 지원 네트워크를 효율적으로 연계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역할을 하는 위원회로 지역의 협력 주체가 모여서 지역의 창업교육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Q13 :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교육 및 관련 지원이 많이 있으나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예산의 연계 등 해결해야 할 문제점이 많지 않나요?

Ans : 맞습니다. 현재는 정부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창업관련 사업 등이 다양하게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해외 사례 및 국내 일부 지역의 우수 사례를 보면 지방 대학을 중심으로 창업교육 및 관련 지원 등이 통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되는 성공사례를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 사회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창업지원 네트워크를 통합하고 연계하려는 노력이 대학을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부산광역시와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여러 대학과 지자체가 연계하여 대학 내부에서 창업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육성된 인재들은 지자체의 다양한 지원프로그램으로 연계되는 사례가 있습니다.

Q&A 창업준비실 운영

Q14 : 창업준비실은 창업보육센터와 다른 개념인가요?

Ans :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창업 보육의 개념은 공간을 중심으로 예비 또는 창업자를 지원해 주는 개념이라면 창업 준비실은 예비 창업자들을 위해 공간과 장비 등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해 주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Q15 : 창업준비실에는 특별하게 구축해야 할 장비와 전담인력 배치가 되어야 하나요?

Ans : 창업준비실은 창업을 보육하는 공간이 아닌 만큼 창업 준비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린터 등 사무용 장비, 시제품 개발을 위한 3D 프린터 등)를 구비하는 것이 효과적이라 판단되며, 장비의 종류와 수량은 학생 창업 수요를 고려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나 전담인력인 경우에는 시제품 제작을 위해 특수 장비를 구축할 경우, 전담인력을 배치함으로써 장비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기업가정신 확산 프로그램 모델

Q16 :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서 해당 권역 교육청과의 협력이 어떠한 형태로 진행되어야 하나요?

Ans : 기업가정신 문화 확산을 위해 해당 권역 인근의 초·중·고등학교와 직접 연계해서 지원이 가능하나, 현실적으로 예산확보와 기업가정신 교육 도입 희망학교 모집 및 선발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므로 해당 권역 교육청과의 MOU 체결 등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학생들에 대한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Q17 : 자유학기제를 실시하는 희망 중학교를 대상으로만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한가요?

Ans :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2016년 모든 중학교에서 의무 실시하므로 프로그램의 특성상 기업가정신 함양 관련 프로그램을 도입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희망하는 모든 학교와 협력을 통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을 하셔도 무방하며 중·고등학생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을 활용하셔도 됩니다.

Q18 : 기본교과과정(국어, 영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기술·가정 등)에 창업교육센터의 지원이 가능한가요?

Ans : 기본교과과정의 경우 과목의 특성상 각 학교에 담당교사가 배정되어있기 때문에 1학기 과정을 전반적으로 운영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무리가 따릅니다. 단, 자유학기제의 기본교과과정 과목도 기존의 과목에서 문제해결, 토론, 실험, 실습, 현장체험, 프로젝트 학습 등을 중심으로 운영하여야하기 때문에 부분별로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Q19 : 선택과정 활동과 진로탐색 활동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으로 어떤 것이 있나요?

Ans :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으로 기업가정신과 혁신, 생활과 창의성, 창의성과 창의적 디자인사고, 창의적 디자인사고와 비즈니스모델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Q20 : 기업가정신 함양 프로그램을 1학기 동안 수업 형태로 진행할 때 담당교사와 창업교육센터의 역할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Ans : 담당교사가 배정되어 워크숍과 교사연수를 통해 기업가정신 프로그램 교수법을 습득하였다더라도 홀로 1학기를 진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조강사 및 창업교육 관련 전문가를 투입하여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담당교사와 보조강사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주제별 창업교육 관련 전문가가 강의에 참여하는 형태의 교육 진행 등의 방법으로 1학기 운영이 가능합니다.

Q21 : 진로동아리와 창업동아리 체험활동형에 대학이 지원할 때 캠프 외에 다른 형태의 지원이 무엇이 있나요?

Ans : 우선, 창업동아리 체험활동형 연계의 경우 창업캠프 외에 창업경진대회 참여, 창업특강 강좌 참여, 창업 멘토링데이 참여 등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진로동아리 연계 체험활동형 연계의 경우 진로캠프 외에 대학의 학과를 탐방하는 프로그램인 학과체험형 운영, 대학 내 진로지원센터 멘토링 참여 등의 연계 지원이 가능합니다.

대학 창업교육 운영 매뉴얼 2.0

발행일

2015년 9월

발행처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미래인재양성팀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45길 16, 305
Tel. 02)2156-2295 Fax. 02)2156-2290

인쇄처

세종디자인기획인쇄 Tel. 042)633-3227

